

농촌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피해 관련 경찰의 대응 방안

조금희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5
1. 연구 내용	5
2. 연구 방법	6
제2장 이론적 배경	9
제1절 이주노동자 개념 및 증가 배경	9
1. 이주노동자의 개념	9
2. 이주노동자 증가 배경	11
3. 조사지역 이주여성 현황	17
제2절 농촌 여성이주노동자의 증가	21
1. 농촌 여성이주노동자 증가 원인	21
2. 농촌 여성이주노동자 도입 경로별 증가	2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8
제3장 농촌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실태 분석	31
제1절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실태자료 분석	31

1. 선행연구 성폭력 실태 자료 분석	31
2.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자료 분석	33
제2절 성폭력 피해 언론보도 사례 분석	40
제3절 소 결	42

제4장 심층면접 조사 및 결과 분석 45

제1절 심층면접 조사	45
1. 조사 대상자	45
2. 조사 방법 및 조사 내용	46
제2절 결과 분석	47
1. 이주노동자 도입 경로 및 절차	48
2. 여성이주노동자 다수지역 및 환경적 특징	59
3.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피해 실태	61
4.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피해 대응 실태	66
5. 농촌지역 이주노동자 범죄예방교육	72
6. 농촌지역 이주노동자 정보제공 방안	78
7. 농촌지역 현장 경찰의 지원 실태	83
8.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90
제3절 소 결	99

제5장 결론 105

제1절 연구의 의의	105
제2절 경찰의 대응 방안	106

참고문헌 112

표 목 차

〈표 1〉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12
〈표 2〉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13
〈표 3〉 불법체류자 체류기간별 현황	13
〈표 4〉 등록외국인 연도별 현황	14
〈표 5〉 등록외국인 시·도별 현황	14
〈표 6〉 결혼이민자 연도별 현황	15
〈표 7〉 결혼이민자 국적별·성별 현황	16
〈표 8〉 결혼이민자 시·도별 현황	16
〈표 9〉 경기도 이주여성 현황	18
〈표 10〉 충청남도 이주여성 현황	19
〈표 11〉 경상남도 이주여성 현황	20
〈표 12〉 충청북도 이주여성 현황	21
〈표 13〉 체류 자격별 외국인력 현황	23
〈표 14〉 2017년 고용허가제 사증 발급 현황	24
〈표 15〉 2017년 체류 자격별 이주노동자 현황	24
〈표 16〉 최근 5년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쿼터 배정 추이	25
〈표 17〉 계절근로제 이주노동자 배정인원	26
〈표 18〉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요 품목	27
〈표 19〉 조사 대상자	46
〈표 20〉 2018년 업종별 도입 규모(E-9)	49
〈표 21〉 2018년 농·축산업 분야 외국 인력 도입 현황	49

〈표 22〉 이주노동자 사전 취업교육 시간 및 내용	51
〈표 23〉 이주노동자 산업별 취업교육기관	52
〈표 24〉 이주노동자 취업교육 내용	53
〈표 25〉 지방청별 외국인 도움센터 현황	81
〈표 26〉 다누리콜센터 설치 현황	92
〈표 27〉 지역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 설치 현황	97

그림목차

〈그림 1〉 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 추이	12
〈그림 2〉 농업 업종별 피해 경험률	34
〈그림 3〉 재배분야	35
〈그림 4〉 선별·포장 등의 분야	35
〈그림 5〉 성폭력 가해자 출신국 및 피해자와의 관계	36
〈그림 6〉 성폭력 피해 대응교육 경험 여부	36
〈그림 7〉 성폭력 피해 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37
〈그림 8〉 공공지원체계의 지원 경험	38
〈그림 9〉 성폭력 피해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및 한계	39
〈그림 10〉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E-9) 채용 절차	50
〈그림 11〉 계절노동자 도입 절차	55
〈그림 12〉 여성긴급전화(1366)와 다누리콜센터(1588-1366) 지원체계	9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1. 연구 배경

한국 사회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 외국인이 많이 유입되었다. 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정부와 경찰에서는 다양한 정책으로 대응해 오고 있지만 최근까지의 주요 정책은 주로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 외에도 한국의 경제성장과 고학력화로 인한 3D산업에서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하여 1993년 정부 주도의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크게 증가하였다. 국내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 또한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켜 외국인력 도입은 불가피하였던 것이다.

산업연수생제도 도입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이들의 인권문제와 불법체류자 양산 등의 피해를 초래하였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03년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였다.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제조업분야와 농업분야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 무시 등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와 함께 여성이주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 세계적인 ‘미투운동(Me Too)’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여성들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여성들의 #Me Too’ 사례를 발표하면서¹⁾ 농촌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각 부처에서는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게 되었다. 경찰에서도 농촌지역 여성이주노동자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당했을 때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농촌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근로환경, 인권실태 등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들어서는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조업분야, 농업분야 등 산업별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들은 다양한 문화권 출신에 따른 문화적 배경과 법률지식 무지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고도 언어소통 부족으로 피해신고 등 대처 방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라는 특징적 요인 때문에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점 등 범죄피해 요인이 상시적으로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이주노동자의 다수가 일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 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최근에는 제조업분야보다 농업분야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 선행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여성이주노동자의 범죄 피해로 인한 한국사회의 혼란과 갈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노동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찰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경찰의 외국인 대상 치안정책은 주로 도시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를 주요 대상으로 했다. 그러다보니 농촌지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치안활동은 미비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농촌지역 여성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등 인권침해 실태와 현장 치안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1) SBS NEWS(2018. 3. 9.) “우리도 당했다”...의원회관서 ‘이주여성 미투’ 사례발표회, [2 ■■■ 2018년 책임과제연구 ■■■](http://news.sbs.co.kr/news;한국농어민신문,(2018. 3. 13.) “성폭력사각지대...이주여성들의 미투” http://www.agrinet.co.kr/news(2018. 9. 18. 검색).</p></div><div data-bbox=)

2. 연구 목적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의 국내 유입에 따른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다.²⁾ 또한 이주노동자의 국내 유입 증가와 더불어 여성이주노동자의 성폭력 피해와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 여성결혼이민자의 유입은 1995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4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혼인건수 중 국제결혼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와 함께 여성이주노동자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외국인 단순노동인력 도입정책을 시행한 이후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³⁾

우리나라 외국 인력의 생활 및 고용실태 관련 국제엠네스티(amnesty) 보고서(2014년)에 의한 지적은 농업분야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문제, 성폭력·성희롱문제, 생활 및 노동실태에 나타난 광범위한 인권문제 등이다. 이는 크게 한국의 외국 인력 제도상의 문제점과 생활 및 노동실태 관련 문제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되고 있다. 이 중 생활 및 고용실태 문제에 대한 국제엠네스티 보고서에 의하면 농·축산 분야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이 취약하고,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점과 생활 및 노동실태에 나타나는 광범위한 인권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⁴⁾

2017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 중 여성취업자는 32.8%(27만 4천)이며, 5.5%(1만 5천)가 농림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여성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인 제조업에서 여성 비율이 19.3%인데 반하여, 농림어업 분야에서는 30.4%가 여성이다.⁵⁾

2) 윤경희, “다문화가정의 사회문제요인 탐색을 통한 경찰의 대응방안 연구”, 2010, 8쪽.

3) 김상찬·김유정,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2011, 320쪽.

4) 장명선 외, 앞의 논문, 2016, 3쪽.

5)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제정리 (2018. 7. 22. 검색).

특히, 농업분야는 성별 분포에서 다른 업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업분야는 여성이주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노동환경은 열악하고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고립된 농장에 흩어져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에 취약하고 공적 기관의 수혜를 받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더욱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피해를 당해도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정보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대처가 곤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이주노동자는 남성의 근로조건에 비해 더 취약한 구조에 있다. ‘외국인’이면서 ‘근로자’가 갖는 전반적인 노동인권문제와 동시에 ‘여성’이라는 삼중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⁶⁾ 이렇듯 여성이주노동자들은 복합적인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더욱 요구된다.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농업분야에서 복합적인 취약성을 지닌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폭력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정확한 실태 분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농촌 여성이주노동자의 특성을 반영한 실태조사는 매우 부족하였다. 최근 들어 농촌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의 특성이 반영된 경우라 하더라도 주로 성희롱과 성폭력 실태 중심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치중하거나 이주여성 지원 법률 및 인권침해 실태, 노동환경 등에 대한 정책적 제언으로 한정하였다.

최근의 연구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연구,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⁷⁾,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⁸⁾ 등이 있다. 특히, 농업 여성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업분야 여성이주노동자의 12.4%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고, 36.2%가 다른 피해 경험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경찰 등 외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는 피해 경험자 90.9%가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있다.⁹⁾

6) 이수연,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노동인권 실태” 「젠더법학」 제5권, 통권 제9호, 한국젠더법학회, 103쪽.

7) 장명선 외, 앞의 논문, 2016.

8) 소라미 외, “2016년 이주여성 농업 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인권법재단공감, 2016.

이와 같이 농촌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이주노동자의 성폭력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를 당한 이들이 신고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경찰의 치안정책은 외진 농촌지역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최근의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반구조화한 질문지로 심층면접 조사를 한다. 심층면접 조사는 농촌 여성이주노동자의 범죄피해 등 인권침해 실태와 치안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촌지역 범죄피해 예방에 효과적인 경찰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1. 연구 내용

이 연구는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에 대한 선행연구 자료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성폭력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농촌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성폭력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경찰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 여성이주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선행연구 실태조사에서 여성폭력 피해 경험률, 피해 유형, 가해자의 출신국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특성, 피해대응 교육경험, 피해 대응의 어려움, 공공지원체계의 지원경험,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과 한계점 등을 분석하여 심층면담 조사에 활용한다.

둘째, 통계청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이주노동자 기초자료를 파악한다. 그리고 외국 인력의 증가 경로인 고용허가제와

9) 소라미 외, 앞의 논문, 2016.;연합뉴스, 국회의원 김삼화, 정춘숙(주관)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2016. 12. 14.), <http://www.yonhapnews.co.kr>(2018. 6. 28. 검색).

계절근로제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 절차와 농촌지역에 여성이주노동자의 유입 원인인 조사지역의 환경적 특징을 알아본다.

셋째,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이주노동자에게 효과적인 맞춤형 범죄예방교육 방안을 조사한다.

넷째, 농촌의 여성이주노동자가 성폭력 피해 신고를 쉽게 하고 성폭력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보제공 방안을 조사한다.

다섯째, 농촌 여성이주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해 현장 경찰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 여성이주노동자 문제에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기관 협력체제(Multiple-Agencies Partnership)를 통한 통합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농촌지역에 맞는 치안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방법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통계자료분석, 심층면접 조사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문헌연구와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이론적 배경과 조사대상 지역을 선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조사지역의 현장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다수 거주국의 여성이주노동자, 이주여성 통역 그리고 농촌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한다.

가.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범죄 피해 실태 연구와 관련된 서적이거나 연구논문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이론적 배경 자료로 활용한다. 특히,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과 여성이주노동자 지원 기관의 연구보고서, 학술지, 학위논문 등 선행연구와 언론보도를 조사·분석한다.

선행연구의 실증적 자료는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의 설문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하고, 성폭력 피해 사례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사례가 공개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특성을 감안하여 이미 언론에 보도된 피해 사례를 활용한다.

나. 통계자료 분석

이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 적합한 체류외국인, 여성등록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 여성이주노동자 통계자료는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 연·월보, 경제활동인구조사, 외국인고용조사, 고용허가제 원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의 통계자료로 사용한다.

다. 심층면접조사

심층면접 조사는 선행연구 자료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성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현장 전문가를 면접 조사한 후, 현장 전문가가 추천한 한국어가 가능한 여성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통역 경험이 많은 이주여성 통역인의 도움을 받아 면접조사를 한다. 그리고 농촌지역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조사를 진행하여 문제점을 도출한다. 심층면접 조사 참여자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모두 부호로 처리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이주노동자 개념 및 증가 배경

1. 이주노동자의 개념

가. 국내법상 이주노동자

우리나라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용어는 통일되지 못한 채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 이민노동자, 이주근로자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주노동자에 관련된 대표적인 국내 법률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 고용법’이라 한다)」로서, 법률에서 볼 수 있듯이 이주노동자를 ‘외국인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동 법률 제2조는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동조 전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를 ‘외국인근로자’의 개념에서 배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여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고용허가를 받아야 한다.¹⁰⁾ 사용자는 표준근로계약을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이주노동자는 취업활동기간 3년의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노동자

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가 입국하기 전에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고용하여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이미 입국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란 용어를 사용하여 등록된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연구하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도 논의하기로 한다.

나. 국제법상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문서로는 ILO협약과 UN협약, EU협약이 있다. 먼저 ILO협약 제143호 「학대 상황의 이주와 이주노동자의 기회 및 처우의 균등 증진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Migrations in Abusive Conditions and the Promotion of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of Migrant Workers, 1975)」은 제2부 제11조 제1항에서 “이주노동자란 자영업 이외에 달리 고용될 목적으로 일국에서 타국으로 이주하는, 혹은 이주해온 자를 말하며, 이주노동자로서 합법적으로 허용된 자를 포함한다.”라고 하여 불법으로 이주한 자는 이주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 별도로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즉 이주노동자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시하고 있다.¹¹⁾

UN 7대 인권조약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제2조에서 “이주노동자란 그 사람이 국적 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동조 제1항)”이라고 정의하면서 제1조에서 “이 협약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 한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종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미등록, 비합법 상태의 이주노동자도 협약의 적용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EU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서로 2002년 채택된 유럽공동체설립조약(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이하 EU조약이라 한다.)을 들 수 있다.¹²⁾ EU조약상 ‘노동자’의 의미는 EU법 해

11) 김주아,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연구”, 2013. 10-14쪽.

석상의 문제이나 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범주에 속하려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노동자는 첫째, 자영업이 아닌 고용된 신분이어야 하며, 둘째, 보수를 목적으로 고용되어야 한다. 한편, EU 내 권리 담론의 일반적인 해석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는 유럽사법재판소는 노동자의 개념이 시간제 노동자와 구직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2. 이주노동자 증가 배경

우리나라는 1990년대 결혼이민자와 체류 외국인의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인한 세계화와 개방화의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함께 외국인의 유학과 일반연수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체류 외국인의 증가를 가져왔다. 체류 외국인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인한 노동 수요 증가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농촌에서 베트남, 필리핀, 중국동포와의 국제결혼 확대는 결혼이민자들이 본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이주노동자의 증가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동포와 결혼이민자의 유입은 크게 증가하였다. 1990년대까지는 종교단체를 통해 입국한 일본여성인 다수를 차지하였다면 2000년대 초부터는 중국과 필리핀 국적의 결혼이민자 증가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외에도 노동인력 부족사태의 심화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입국이 계속 증가하였고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태국 등 다양한 국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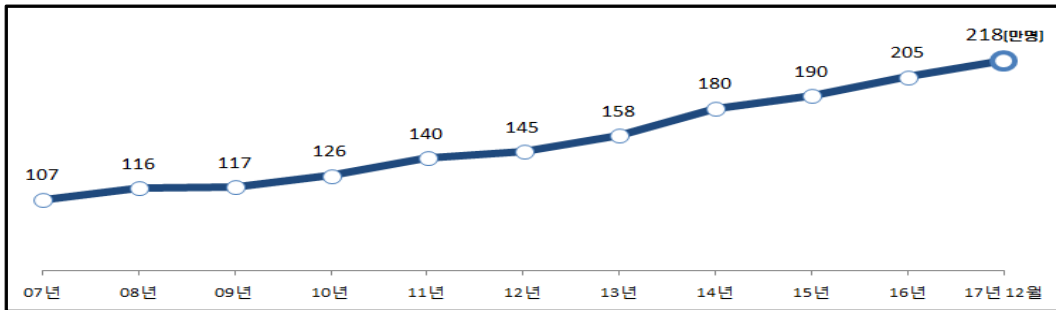
농촌지역 이주노동자의 증가 원인은 체류외국인과 등록외국인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먼저 체류외국인과 등록외국인의 증가 현황을 살펴보고 결혼이민자의 증가 등 전반적인 외국인의 증가 실태와 이들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조사하여 이 연구의 심층면접조사 대상지역으로 정한다.

12) 동 조약은 2007년 체결된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에 의해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으로 개칭되었다.

가. 체류외국인 증가

국제화 시대에 따라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체류외국인의 증가 실태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1> 과 같이 2007년 1,066,273명에서 2017년 말 기준 2,180,498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4.21%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¹³⁾

<그림 1> 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 추이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7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현황은 중국 1,018,074명(46.7%), 베트남 169,738명(7.8%), 태국 153,259명(7.0%), 미국 143,568명(6.6%), 우즈베키스탄 62,870명(2.9%) 순이다. 특히, 태국은 사증면제 입국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체류 외국인이 세 번째로 많은 국가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2017. 12. 31. 현재, 단위: 명)

국적 구분	계	중국 (한국계)	베트남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기타
인원	2,180,498	1,018,074 (679,729)	169,738	153,259	143,568	62,870	58,480	47,105	45,744	481,660
비율	100%	46.7%	7.8%	7.0%	6.6%	2.9%	2.7%	2.2%	2.1%	22.1%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7년 1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제작성

13)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7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18. 7. 20. 검색).

체류외국인의 자격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농촌지역에 체류하는 비전문취업(E-9) 자격은 2017년 12월 말 기준 279,127명으로 12.8%를 차지한다. 단기취업(C-4) 자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 규모가 증가하면서 2013년 460명에서 2017년 1,719명으로 증가폭이 가장 크다.

〈표 2〉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2017. 12. 31.현재, 단위: 명)

구분	계	재외동포 (F-4)	비전문 취업(E-9)	방문취업 (H-2)	단기취업 (C-4)	영주 (F-5)	선원취업 (E-10)	유학 (D-2)	기타
인원	2,180,498	415,121	279,127	238,880	1,719	136,334	16,069	86,875	1,006,373
비율	100%	19.0%	12.8%	11.0%	0.1%	6.3%	0.7%	4.0%	46.2%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7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서 재작성

2017년에는 사증면제 협정국가 국민 및 단기방문자격 소지 외국인의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여 불법체류자 수는 2013년 183,106명에서 2017년 251,041명으로 37.1% 증가하여 불법체류율은 11.5%임을 알 수 있다. 등록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로 된 경우는 비전문취업(E-9) 자격의 불법체류자가 45,387명(54.8%)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¹⁴⁾

〈표 3〉 불법체류자 체류기간별 현황

(2017. 12. 31.현재, 단위: 명)

구분	총 체류자	불법체류자				불체율
		계	등록	단기	거소신고 ¹⁵⁾	
2013년	1,576,034	183,106	95,637	85,936	1,533	11.6%
2017년	2,180,498	251,041	82,837	167,140	1,064	11.5%
증감률	38.4%	37.1%	-13.4	94.5%	-30.6%	-0.9%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7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서 재작성

1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7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18. 7. 20. 검색).

15)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 현황임.

나. 등록외국인 증가

등록외국인의 연도별 현황으로는 <표 4> 와 같이 2010년 918,917명에서 2014년 1,091,531명, 2016년 1,161,677명, 2017년에는 1,171,76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4> 등록외국인 연도별 현황¹⁶⁾

(2017. 12. 31.현재,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원	918,917	982,461	932,983	985,923	1,091,531	1,143,087	1,161,677	1,171,762
증가율	100%	106.9%	101.5%	107.3%	118.8%	124.4%	126.4%	127.5%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7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7년 시·도별 등록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표 5> 와 같다. 전체 1,171,762명 중에서 남성이 671,426명, 여성이 500,336명이다. 광역시 이상을 제외한 도농 및 농촌지역의 여성 등록외국인은 경기, 충남, 경남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등록외국인 시·도별 현황

(2017. 12. 31.현재, 단위: 명)

구분	총인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총인원	1,171,762	267,153	42,837	26,442	62,596	21,279	17,431	20,513
여성	500,336	139,502	18,548	11,523	26,243	9,624	9,602	8,325
남성	671,426	127,651	24,289	14,919	36,353	11,655	7,829	12,188
경기	강원	충북	충남 ¹⁷⁾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81,628	16,949	36,656	68,280	28,588	31,221	53,364	75,136	21,689
150,286	8,007	13,766	28,221	13,488	12,218	19,781	23,077	9,771
231,342	8,942	22,890	40,059	15,100	19,003	33,583	52,059	11,918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7년 1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월보」에서 제작성

16)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2018. 7. 20. 검색).

17) 세종특별자치시 1,646명 포함.

다. 결혼이민자(국민의 배우자)¹⁸⁾ 증가

세계적인 현상인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의 흐름에 여성의 결혼이주도 포함되는데 한국사회도 오래 전부터 이러한 현상을 보여 왔다. 여성의 고학력 및 혼인율 감소 등으로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농촌지역에 여성 결혼이민자는 매우 증가하였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농업의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고 본국의 친정 식구들을 초청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노동력을 충원해주기도 한다.

1990년대까지는 종교단체를 통해 일본여성의 국내 입국이 많았다. 2000년대 초부터는 중국 및 필리핀 국적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주로 입국하였다. 2002년 이후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는 매년 28%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 2007년부터 증가율이 점점 둔화되었다. 특히, 2014년 4월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 사증발급 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은 0.96%로 둔화되었으나 2017년에는 155,457명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하였다.¹⁹⁾

〈표 6〉 결혼이민자 연도별 현황

(2017. 12. 31. 현재, 단위: 명)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원	110,362	122,552	125,087	141,654	144,681	148,498	150,865	150,994	151,608	152,374	155,457
증가율	100%	111.0%	113.3%	128.4%	131.1%	134.6%	136.7%	136.8%	137.4%	138.1%	140.9%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연보」에서 재작성

결혼이민자의 유입은 앞서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1990년대까지는 일본여성의 유입이 많았으나 2000년대 초부터 중국, 필리핀의 결혼이민자가 증가하였다. 그 후 여러 나라로 확대되면서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태국 등으로 국적이 다양해지고 있다.

18) 국민의 배우자: 2009년 이전(F-1-3, F-2-1), 2010년 이후(F-2-1, F-5-2)

결혼이민자: 2011년 12월 15일 신설(F-2-1, F-5-2, F-6).

1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7년 12월(2018. 7. 20. 검색).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현황으로는 중국이 전체의 37.1%를 차지하여 가장 많다. 다음은 베트남 27.1%, 일본 8.6%, 필리핀 7.6% 순이다.

〈표 7〉 결혼이민자 국적별·성별 현황

(2017. 12. 31. 현재, 단위: 명)

구분 \ 국적	계	중국 ²⁰⁾	(한국계)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타이	몽골	기타
전체	155,457 (100%)	57,644 (37.1%)	21,521	42,205 (27.1%)	13,400 (8.6%)	11,783 (7.6%)	4,459 (2.9%)	3,671 (2.4%)	2,396 (1.5%)	19,899 (12.8%)
남성	25,230 (16.2%)	12,116	7,157	1,762	1,223	368	119	83	130	9,429
여성	130,227 (83.8%)	45,528	14,364	40,443	12,177	11,415	4,340	3,588	2,266	10,470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연보」

2017년 결혼이민자의 체류 현황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전체 153,649명 중 여성이 128,584명으로 83.69%를 차지하여 월등히 많다. 전체 시·도별 현황으로는 경기(28.2%), 서울(17.9%) 경남(6.6%), 인천(6.4%) 충남(5.3%) 순으로 결혼이민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으나 대도시인 서울, 인천을 제외하면 경기, 충남, 경남지역이 40.1%를 차지하고 있다.

〈표 8〉 결혼이민자 시·도별 현황

(2017. 12. 31. 현재, 단위: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총 인원	153,649 ²¹⁾	27,491	7,215	5,177	9,773	3,415	3,454	3,358
여성	128,585	20,172	6,165	4,469	7,905	3,009	3,071	2,913
남성	25,064	7,319	1,050	708	1,868	406	383	445
경기	강원	충북	충남 ²²⁾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3,306	3,602	4,954	8,793	5,975	6,657	7,773	10,190	2,516
34,995	3,339	4,444	7,942	5,605	6,367	7,076	8,921	2,192
8311	263	510	851	370	290	697	1,269	324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7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서 재작성

20) 한국계 포함.

21) 결혼이민자 시·군·구별 통계는 지역별·국적별·성별 통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22) 세종시 거주 결혼이민자 684명 포함.

농촌지역에 여성결혼이민자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폭력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가정 내 갈등과 폭력 피해 발생요인²³⁾은 다양하다. 여성결혼이민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남성은 무능하거나 경제력이 있어도 이주여성의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거나 부부간 언어·문화의 격차에 따른 소통 부족과 불만 누적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성적학대가 수반되기도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선행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성폭력 비율이 23.5%에 이르고 있어²⁴⁾ 구조적으로 취약한 이주여성의 인권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사회의 문화, 관습 등에 낯설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취약하다. 특히, 농촌지역 특성상 외진 곳에 고립되어 있거나 교통이 불편해 왕래가 적은 여성결혼이민자는 가정폭력 및 성적학대 등 범죄 피해자가 되기 쉬우므로 경찰의 치안대책은 더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3. 조사지역 이주여성 현황

이 연구의 조사대상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앞에서 등록외국인과 결혼이민자의 연도별, 시·도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각 시·도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성등록외국인과 여성결혼이민자가 다수 거주하고 여성이주노동자가 많은 지역으로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 경기, 충남, 경남지역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 세 지역과 여성이주노동자가 다수 거주하면서 농업에 계절근로제를 확대하고 있는 충북지역을 최종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인 4개도의 시·군·구별 이주여성에 대한 항목별 세부 분석 현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3) 정도희,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제언”, 2012, 41-42쪽.

24) 설동훈 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쟁점과 전망”, 2005, 124쪽.

가. 경기지역 이주여성 현황

경기지역은 대도시에 인접해 있어 제조업과 비닐하우스 채소재배 등 농업에 이주노동자가 많은 지역이다. 특히, 안산단원, 시흥, 부천, 평택지역에 다수 분포하나 주로 제조업이 많이 이뤄지는 안산단원, 시흥, 부천을 제외하면 도농지역인 평택시에 여성등록외국인 8,488명, 결혼이민자 1,826명, 여성이주노동자 2,660명 등 다수 분포하고 있다.

〈표 9〉 경기도 이주여성 현황

(단위: 명)

시·군·구	등록외국인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²⁵⁾	시·군·구	등록외국인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소 계	150,286	34,995	51,036				
가평군	607	348	72	안산단원구	17,671	2,358	7,600
고영덕양구	2,520	959	608	안산상록구	5,209	1,265	1,471
고양일산동구	1,728	562	544	안성시	3,640	699	1,342
고양일산서구	1,613	504	482	안양동안구	961	429	246
과천시	116	55	23	안양만안구	2,577	527	757
광명시	2,940	765	915	양주시	1,738	700	510
광주시	3,831	1,055	1,439	양평군	866	284	354
구리시	779	385	158	여주시	1,293	336	538
군포시	3,182	678	1,074	연천군	263	112	68
김포시	3,924	1,100	1,319	오산시	4,102	868	1,383
남양주시	2,561	1,360	515	용인기흥구	2,461	621	562
동두천시	1,352	352	648	용인수지구	1,561	329	369
부천시	10,275	2,520	2,860	용인처인구	3,202	673	1,289
성남 분당구	1,542	477	328	의왕시	588	238	154
성남 수정구	5,256	726	1,937	의정부시	2,210	910	336
성남 중원구	1,714	591	499	이천시	2,717	632	1,431
시흥시	12,758	2,395	4,662	과주시	3,065	1,151	976
수원 권선구	4,605	1,014	1,496	평택시	8,488	1,826	2,660
수원 영통구	3,409	484	613	포천시	2,755	696	1,361
수원 장안구	3,146	584	738	하남시	801	366	190
수원 팔달구	6,606	813	2,588	화성시	9,654	2,248	3,921

자료: 등록외국인, 결혼이민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에서 재작성(2017. 12. 31.기준)

※ 4개 연구지역 모두 결혼이민자는 국민배우자(F-2-1, F-5-2, F-6-1), 자녀양육(F-6-2), 혼인단절(F-6-3)을 포함하였음.

25) 이주여성노동자는 경기·충남·경남·충북지역 모두 2016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을 활용하여 재 작성하였다.(2016년 말 기준).

나. 충남지역 이주여성 현황

충남지역은 도농지역인 아산시에 여성등록외국인 6,067명, 여성결혼이민자 1,185명, 여성이주노동자 1,760명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순수 농업지역인 논산시에는 몽골, 태국 등 이주노동자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데 제3장 제2절에서 후술하는 피해 사례와 같이 여성이주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지역이다.

〈표 10〉 충청남도 이주여성 현황

(단위: 명)

시·군·구	등록외국인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시·군·구	등록외국인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소계	24,929	7,360	6,696	서산시	1,892	583	326
계룡시	115	56	15	서천군	327	179	58
공주시	1,005	386	134	아산시	6,067	1,185	1,760
금산군	889	265	229	예산군	700	303	162
논산시	1,903	435	949	천안동남구	3,566	845	942
당진군	36	24		천안서북구	4,021	1,083	1,155
당진시	1,781	669	474	청양군	294	151	80
보령시	622	334	122	태안군	385	220	48
부여군	585	305	106	홍성군	741	337	136

자료: 등록외국인, 결혼이민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에서 제작성(2017. 12. 31.기준)

다. 경남지역 이주여성 현황

경남지역은 농·어촌 복합지역으로 여성등록외국인은 23,077명, 여성결혼이민자는 8,921명, 여성이주노동자는 5,492명이다.

경남에서도 밀양지역은 대표적인 농업지역으로 최근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면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서 언론에 문제 제기하면서 크게 알려진 지역으로 밀양지역의 갯잎농사에 캄보디아 여성이주노동자들이 대량 투입되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표 11〉 경상남도 이주여성 현황

(단위: 명)

시·군·구	등록외국인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시·군·구	등록외국인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소 계	23,077	8,921	5,492				
거제시	2,551	795	549	창녕군	760	211	285
거창군	272	156	32	창원시마산합포구	866	409	109
고성군	391	197	89	창원시마산회원구	941	433	181
김해시	4,804	1,483	1,319	창원시성산구	1,094	462	287
남해군	164	104	11	창원시의창구	1,483	642	249
밀양시	1,242	300	616	창원시진해구	1,163	477	270
사천시	704	311	145	통영시	776	414	177
산청군	336	108	144	하동군	325	164	55
양산시	1,894	877	407	함안군	617	280	120
의령군	301	103	119	함양군	213	133	19
진주시	1,899	716	259	합천군	281	146	50

자료: 등록외국인, 결혼이민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에서 재작성(2017. 12. 31.기준)

라. 충북지역 이주여성 현황

충북지역의 여성등록외국인은 13,766명, 여성결혼이민자는 4,444명, 여성이주노동자는 3,564명으로 농촌지역으로는 이주노동자가 많은 지역이다. 특히, 음성군은 여성이주노동자가 1,029명으로 28.9% 차지하여 가장 많이 분포한다. 특히, 제조업과 농업이 많은 지역으로 과수농사나 시설하우스의 채소재배 등에 여성이주노동자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

〈표 12〉 충청북도 이주여성 현황

(단위: 명)

사·군·구	등록외국인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사·군·구	등록외국인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소 계	13,766	4,444	3,564				
괴산군	290	135	57	충주시	1,853	540	431
단양군	118	81	10	증평군	346	181	66
보은군	240	138	24	진천군	1,567	401	606
영동군	283	173	23	청주상당구	730	401	80
옥천군	300	178	34	청주서원구	1,164	250	210
음성군	2,287	566	1,029	청주청원구	1,441	409	316
제천시	756	330	83	청주흥덕구	2,391	661	595

자료: 등록외국인, 결혼이민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에서 재작성(2017. 12. 31.기준)

제2절 농촌 여성이주노동자 증가

1. 농촌 여성이주노동자 증가 원인

우리나라는 농촌지역에서 여성의 고학력 및 혼인을 감소로 국제결혼이 성행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외국 여성과의 국제결혼 확대는 농촌의 부족한 일손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급속한 경제 성장 및 세계화로 인한 요청과 고학력화로 인한 3D산업에서의 노동력 부족 현상은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을 확대하게 되었다. 국내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구의 감소는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켜 이주노동자 도입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특히 여성의 손길이 더 필요한 농촌지역의 농업분야에서 여성이주노동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처음 이주노동자의 도입은 정부의 주도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인력 부족이 심화된 산업에 도입하였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특히 농업분야의 노동력 노령화

및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의 하나로 2004년부터 농·축산업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주노동자가 더욱 증가하게 된 것이다.²⁶⁾

고용허가제도 외에 다른 이주노동자의 유입 경로는 법무부에서 농번기 인력난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분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단기취업 외국인 고용제도로 파종, 수확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한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인력을 도입하는 제도이다. 지자체가 필요한 인원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 내에서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비자를 발급하여 지자체가 이주노동자를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1~3개월 단위로 짧게 일을 하게 된다.

농업이 3D업종이다 보니 농촌에서 일손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내국인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일손을 확보할 수 있고 상당수가 농사 경험이 있다는 점 때문에 농촌에서 반응이 좋아 계절노동자 도입 요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타 업종에 비해 농업분야에서 여성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은 것은 과수원의 과일 수확이나 딸기, 토마토, 깻잎, 고추, 채소재배 등 여성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농업에서 여성 노동력의 수요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증가 원인으로는 앞의 <표 3> 불법체류자 체류기간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법체류의 주요 원인인 사증면제 협정국가 국민 및 단기방문(C-3)²⁷⁾자격 소지 외국인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여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제조업이나 도시에서 떨어져 있고 외진 농촌에서 일하기도 한다. 이렇듯 다양한 원인으로 농촌지역에 이주노동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여성이주노동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여성이주노동자는 결혼이민자를 제외하면 고용노동자와 계절노동자가 대부분이므로 이주 경로별로 구분하여 이주노동자의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26) 엄진영 외,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2017, 4쪽.

27)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

2. 농촌 여성이주노동자 도입 경로별 증가

가. 고용허가제(E-9)

2017년 체류 자격별 외국인력 현황을 보면 비전문취업(E-9)인력은 279,127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남성은 254,750명, 여성은 24,377명으로 여성비율은 8.7%를 차지하고 있다.

〈표 13〉 체류 자격별 외국인력 현황²⁸⁾

(2017. 12. 31.현재)

구 분	총 계	단순 기능 인력				전문 인력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방문취업 (H-2)	소 계	
계	581,480	279,127	16,069	238,880	534,076	47,404
남성	440,427	254,750	16,056	140,651	411,457	28,970
여성	141,053	24,377	13	98,229	122,619	18,434
여성비율	24.3%	8.7%	0.08%	41.1%	23.0%	38.9%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2017년 12월호에서 재작성

외국인이 비전문취업(E-9)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경우 최장 4년 10개월까지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 2017년 고용허가제 사증발급 현황은 전체 55,805명 중 여성이 4,815명으로 8.6%를 차지한다. 농업분야 사증발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7,170명으로 12.9%를 차지하고 있다.²⁹⁾ 이중 여성노동자는 2,509명으로 36.0%를 차지하고 있어 타 업종보다 여성이주노동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28) 불법·합법 체류를 모두 포함한 인력이다.

29) 불법체류자까지 고려하면 농업분야 이주노동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4〉 2017년 고용허가제 사증 발급 현황

(단위: 명, %)

구 분	계	제조업 (E-9-1)	건설업 (E-9-2)	농업 (E-9-3)	어업 (E-9-4)	서비스업 (E-9-5)
계	55,805	43,541	2,060	7,170	2,934	100
남성	50,990	41,243	2,060	4,661	2,931	95
여성	4,815(8.6%)	2,298(5.3%)	0	2,509(36.0%)	3(0.1%)	5(5.0%)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7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7년 고용허가제에 있어 체류 자격별 이주노동자 현황을 보면 전체 266,237명으로 이중에서 여성노동자는 8.4%인 22,296명이다. 농업분야는 다른 분야 보다 가장 비중이 높아 전체 30,582명 중에 10,327명으로 33.8%를 차지하고 있다.

〈표 15〉 2017년 체류 자격별 이주노동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계	제조업 (E-9-1)	건설업 (E-9-2)	농업 (E-9-3)	어업 (E-9-4)	서비스업 (E-9-5)
계	266,237	211,941(79.6%)	12,631(4.7%)	30,582(11.5%)	10,931(4.1%)	152(0.06%)
남성	243,941	199,992(82.0%)	12,625(5.2%)	20,255(8.3%)	10,918(4.5%)	151(1.06%)
여성	22,296(8.4%)	11,949(5.6%)	6(0.05%)	10,327(33.8%)	13(0.12%)	1(0.7%)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7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서 재작성(2017.12.31.기준)」

일반 외국인력(E-9) 쿼터제 하에서 입국한 이주노동자 중에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쿼터는 꾸준히 상승하였다. 2013년 5,600명에서 2017년 5,870명 배정에 인원을 추가하는 등 농촌에서 이주노동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다.

〈표 16〉 최근 5년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쿼터 배정 추이

(단위: 명)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일반(E-9)	5,600	5,850	5,650+a	5,900+a	5,870+a
재입국 취업자	400	150	350	700	730
총 계	6,000	6,000	6,000+a	6,600+a	6,600+a

자료: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³⁰⁾

농업분야 이주노동자 쿼터는 해마다 2천~5천명이 배정되다 2013년부터는 6천여 명으로 증원했다. 2017년에는 6,600명에 추가 인원까지 확대했으나 농촌에서는 쿼터 확대를 더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가 10년 이상 시행되는 동안 성폭력문제, 인권침해, 노동력 착취, 숙식비 과다공제 등 부작용이 노출되었다. 특히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거주 등에 따른 인권침해 및 성폭력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에서는 최소 주거기준을 설정하여 비닐하우스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장에는 신규 인력을 배정하지 않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³¹⁾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이하 ‘계절근로제’라 한다.)란 법무부에서 농업분야 농번기 인력난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단기취업 외국인 고용제도이다. 과종이나 수확기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한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인력을 투입하는 제도로 지자체가 필요한 인원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 내에서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C-4)비자를 발급받아 지자체에서 외국인을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고용허가제는 인력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 계절적, 일시적으로 대규모의 노동력이 필요할 때 인력 수급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부분에 1~3개월 단위로 짧게 일하는 이주노동자

30)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eps.go.kr>), (2018. 7. 23. 검색).

31) 2017년 본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농가가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숙소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인 경우는 선정과정에서부터 배제한다.

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농촌에서는 내국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일손을 구할 수 있고 계절근로자 중 상당수는 농사 경험이 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선호하고 있다.

‘계절근로제’는 2015년 10월 충북 괴산·보은군에서 시범적으로 19명 도입을 하였고, 2018년에는 31개 지자체에 2,328명이 배정되는 등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을 비롯해 2018년에 라오스가 추가되어 모두 16개국에서 이주노동자가 도입된다.

2017년 상·하반기 각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표 17> 과 같이 지자체에서 2,263명을 요구하였으나 1,547명(68.4%)이 배정되어 농가에서 요구한 만큼 이주노동자를 배정하지 못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확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통해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17> 계절근로자제 이주노동자 배정인원

(단위: 명)

지자체	상반기	하반기	지자체	상반기	하반기
강원 양구군	164(250)	138(151)	제주 제주시	-	88(89)
강원 홍천군	109(143)	-	충북 괴산군	63(79)	78(98)
강원 화천군	31(49)	48(49)	충북 단양군	51(75)	-
강원 인제군	-	13(13)	충북 보은군	53(81)	-
강원 정선군	-	17(19)	충북 영동군	15(15)	-
경기 평택시	-	51(59)	충북 음성군	20(21)	10(11)
경기 포천시	-	3(3)	충북 진천군	13(24)	39(42)
경남 하동군	-	15(19)	경북 영덕군	-	(107)
경북 영양군	37(41)	49(55)	경북 포항시	-	161(432)
경북 성주군	-	21(23)	충남 보령시	148(174)	-
경북 영주군	-	5(5)	충남 서천군	63(84)	-
전남 보성군	-	11(11)	상·하반기 계	767(1,036)	780(1,227)
제주 서귀포시	-	33(41)	합 계	1,547(2,263)	

주: () 안은 당초 지자체 수요 인원.

자료: 법무부 내부자료.³²⁾

32) 엄진영 외, 앞의 논문, 2017, 55쪽.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과산의 절임배추, 양구 시래기, 제주 감귤, 음성 복숭아 등 과수원과 채소 재배에 수요가 많다. 어업 분야에서는 영덕 오징어 등 수산물 건조와 포항은 과메기, 오징어 건조작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기도 한다.

〈표 18〉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요 품목

지자체	수요 품목	지자체	수요 품목
강원 양구군	시래기 등	경기 포천시	배추, 시금치
강원 화천군	토마토, 오이, 호박 등	경북 성주군	참외 등
경북 영양군	고추, 과수, 엽채류 등	경북 영주시	사과, 고추
충북 괴산군	절임배추, 찰옥수수, 담배	경남 하동군	딸기, 부추, 양상추 등
충북 음성군	복숭아, 사과 등	전남 보성군	딸기 등
충북 진천군	수박 오이 등	제주 서귀포시	감귤, 채소 등
강원 인제군	풋고추, 오미자 등	제주 제주시	감귤, 무, 양배추 등
강원 정선군	과수 나물 등	경북 영덕군	수산물 건조(오징어 등)
경기 평택시	오이, 호박, 토마토	경북 포항시	과메기, 오징어 건조

자료: 법무부 내부자료³³⁾

계절근로제를 통해 입국한 여성이주노동자들이 근무환경이 열악한 농촌에서 단기 체류하다 보면 인권침해 및 성폭력 등 피해가 우려되기도 한다. 법무부가 농·어촌 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허용 인원을 확대해 가는 만큼 계절노동자를 농촌에 배치하기 전에 범죄피해 예방교육과 농장주를 대상으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등 경영자로서의 성숙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육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3) 엄진영 외, 앞의 논문, 2017, 54쪽.

제3절 선행연구 검토

그동안 외국인 고용실태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별 차이를 반영한 젠더적 시각에서의 분석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이주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나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야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농업분야의 이주노동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각 농가에서는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이주노동자 허용 규모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하다. 고용허가제 적용에 따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와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부터 법무부 사업으로 계절근로제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가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의 이주노동자 도입부터 관리까지 관련 내용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³⁴⁾

선행연구들은 이주노동자 또는 농업분야의 연구라고 하더라도 농업부문 이주노동자 고용제도의 한계와 미비점을 개선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한 연구와 이주노동자의 전반적인 인권실태, 제조업 분야로 한정된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실태와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조사한 연구 등이 있다. 농촌 여성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연구로는 최근에 이주여성 농업 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를 들 수 있다.

먼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엄진영 외, 2017)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제도 및 정책 집행과정을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이를 토대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의 한계와 미비점을 개선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이병렬 외, 2013)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는 농·축산업 분야에 한정하여 이주노동자의 전반적인 인권실태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 응답자의 30.8%가 성희롱·성폭행 경험이 있었고, 50.0%는 같은 농장이나 지인의 경험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³⁵⁾

34) 엄진영 외, 위의 논문, 10쪽.

35) 이병렬 외,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3, 194쪽; 소라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성폭력 피해 이후에도 신고를 못하고 그냥 참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연구에서도 경찰이나 인권단체 등에 알리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⁶⁾

한국외국인인력지원센터 외(2013) 연구는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로 산업별 또는 성별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³⁷⁾

국가인권위원회(장명선 외, 2016) 연구는 제조업 분야의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연구로, 제조업 분야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노동 인권적 시각에서 뿐만 아니라 젠더적 관점에서 검토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용허가제에 의해 도입된 단순 노동인력의 다수를 차지하는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정비 및 정책개선 방안과 권리구제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³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박선희 외, 2015)의 연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베트남, 태국, 몽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조사한 연구를 토대로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민간지원단체 등 기관별로 나누어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³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소라미 외, 2016)에서는 그동안 연구가 없었던 농업분야에서 처음으로 이주여성 농업 노동자 성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하였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 농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초점면접 조사한 결과 성폭력 피해 실태의 심각성과 성적 접촉 외에도 주거환경과 노동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육경험 부족 및 정보부족으로 대

미 외, “이주여성 농업 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2016, 10쪽.

36) 이병렬 외, 앞의 논문, 2013, 196쪽; 소라미 외, 앞의 논문, 2016, 12쪽.

37) 한국외국인인력지원센터 외,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보고서”, 2013, 41쪽; 소라미 외, 앞의 논문 2016, 12쪽.

38) 장명선 외, 앞의 논문, 2016, 6쪽.

39) 박선희 외, “경기도 이주여성 노동자 직장내 성희롱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경기도외국인권지원센터, 2015.; 소라미 외, 앞의 논문, 10쪽.

응을 못하고 있는 점을 들면서 성폭력 피해 예방교육 및 정보제공과, 피해신고 즉시 사업장 변경 보장, 이주여성에게 차별 없는 성폭력 피해 지원체계 보장, 공정한 사법 접근성 보장 등을 제시하였다.⁴⁰⁾ 이 연구의 ‘이주여성 농업 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자료는 제3장에서 세밀하게 분석하여 심층면담 조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산업별 또는 대상자별 이주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서 이주노동자의 성폭력 실태조사와 전반적인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차별화하여 경찰의 관점에서 농촌지역 여성이주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농촌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유의미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40) 소라미 외, 앞의 논문, 2016, 48쪽.

제3장 농촌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실태 분석

제1절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실태 자료 분석

1. 선행연구 성폭력 실태 자료 분석

농촌지역의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로 인해 이주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여성 이주노동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증가와 함께 농촌지역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장주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성폭력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농·축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여성이주노동자 비율이 매우 높아 농·축산업분야 전체 이주노동자 중 여성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이주노동자는 한국의 법·제도에 어둡고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에, 그리고 소수의 인원이 농장주와 장시간 함께 지내기 때문에 성폭력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있다.

여성이주노동자의 12.4%가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한국말을 못해 불이익을 걱정하며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며 경찰 등 지원 기관의 도움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⁴¹⁾ 또한,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농장은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마을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교통편이 불편해 고용주 등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경찰서가 어디인지도 몰라 신고를 못하기도 한다.⁴²⁾ 이와 같이 여성이주노동자의 성폭력 피해와 이에 대한 대응 실태 등 선행연구 자료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41) 한국일보(2018. 2. 20.),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2200465297145> (2018. 7. 20. 검색).

42) 소라미 외, 앞의 논문, 2016, 62-63쪽.

국가인권위원회(이병렬 외, 2013)의 농축산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 조사에서는 여성 응답자의 30.8%가 성희롱·성폭행 경험이 있고, 50.0%는 같은 농장이나 지인의 피해 경험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성폭력 피해 경험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태도가 있음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 경험률은 30.8%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⁴³⁾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외(2013)의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는 여성 응답자의 10.7%가 사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피해 경험 중에서 가장 많은 응답은 강간과 신체접촉으로, 각 피해 경험의 47.4%를 차지하였고, 성매매 요구를 받은 경우도 21.1%에 해당하였다. 여성이주노동자가 불법체류 신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는 응답(47.4%)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실직 우려(46.8%), 수치심(31.6%), 의사소통의 어려움(21.1%), 정보부족(15.8%), 보복우려(5.3%) 순이었다.⁴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박선희 외, 2015)의 연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베트남, 태국, 몽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조사한 연구로 강제추행 및 강간에 해당하는 ‘성행위 시도형’ 성희롱의 경험을 산업별로 살펴본 결과 농·축산업 종사 여성의 피해 경험은 서비스업보다는 낮았지만 제조업이나, 기타 산업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 후 도움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23.2%), 누구에게 말해야 도움이 될지 몰라서(21.8%), 창피하고 오히려 내가 비난 받을까 봐(18.2%), 미등록 체류 상태 때문에 신고가 두려워서(16.8%) 등으로 나타났다.⁴⁵⁾ 이와 같이 의사소통과 정보부족, 미등록 체류자격 등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피해에 대응하기 어려웠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장명선 외, 2016)의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연구에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및 성폭행 정도에 대해서는 성적언동을 동반한 성희롱 행위(74.0%)가 가

43) 이병렬 외, 앞의 논문, 2013, 194쪽; 소라미 외, 앞의 논문, 2016, 10쪽.

44)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외, 2013, 41쪽; 소라미 외, 앞의 논문 2016, 12쪽.

45) 박선희 외, 앞의 논문, 2015, 60쪽.

장 심각(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54.0%), 돈을 주겠다고 성매매를 요구하는 행위(50.0%), 성폭행(강간) 행위(48.0%) 순으로 그 심각함을 제시하였다. 다만, 성희롱과 성폭행의 심각성 정도는 업무 담당자와 여성이주노동자 당사자가 느끼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미등록 상태를 신고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성폭력 피해의 수치심, 실직 우려, 정보부족, 보복우려 등이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2016)의 충청남도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성 외국인 노동자의 10.7%가 사내 성희롱·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해자의 유형으로는 사장(57.6%), 한국인 직장 동료(51.5%), 한국인 관리자(45.5%) 순이며, 피해 노동자의 56.4%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였다.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로는 68.2%가 불법체류 신고(47.4%), 실직우려(36.8%), 수치심(31.6%), 의사소통의 어려움(21.1%), 정보부족(15.8%), 보복우려(5.3%) 등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에 응한 외국인 노동자 69.9%가 직장 내 의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⁴⁶⁾

이와 같이 선행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이주노동자의 성폭력 피해는 심각하지만 경찰기관에 신고 등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조사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소라미 외, 2016)의 ‘이주여성 농업 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자료를 기초로 성희롱·성폭력 피해 실태를 7개 항목으로 나눠 세밀하게 알아보았다.

이 실태조사 자료는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중 캄보디아 출신 152명(75.2%), 베트남 출신 50명(24.8%) 등 202명 대한 설문조사와 비전문취업(E-9) 5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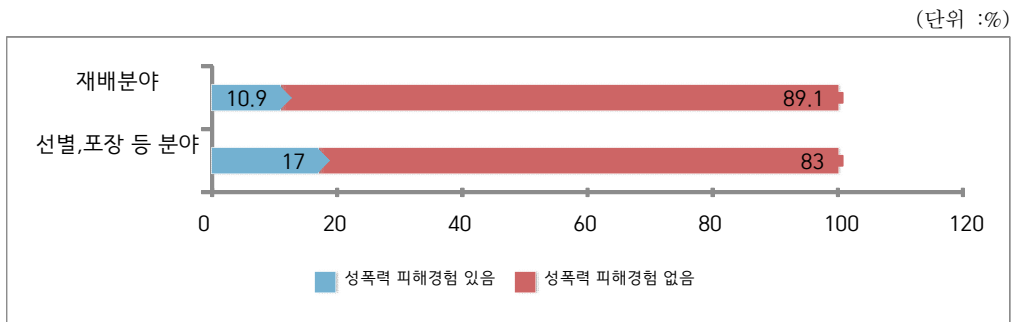
46)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조사”, 2016, 45-46쪽.

이주여성 상담 및 지원 활동가 3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조사 결과이다.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실태에 대한 응답 자료를 성폭력 피해 경험률, 성폭력 피해 유형,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 성폭력 피해 대응교육 경험, 성폭력 피해 대응의 어려움, 공공지원체계의 지원 경험 및 한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이주여성 농업 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실태를 세밀하게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가. 성폭력 피해 경험률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업종에 따라 재배분야와 선별·포장 등 분야로 나눠 조사한 결과이다. 재배분야 10.9%, 선별·포장 등의 분야 17.0%로 재배분야보다 선별·포장분야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이 더 높았다.

〈그림 2〉 농업 업종별 피해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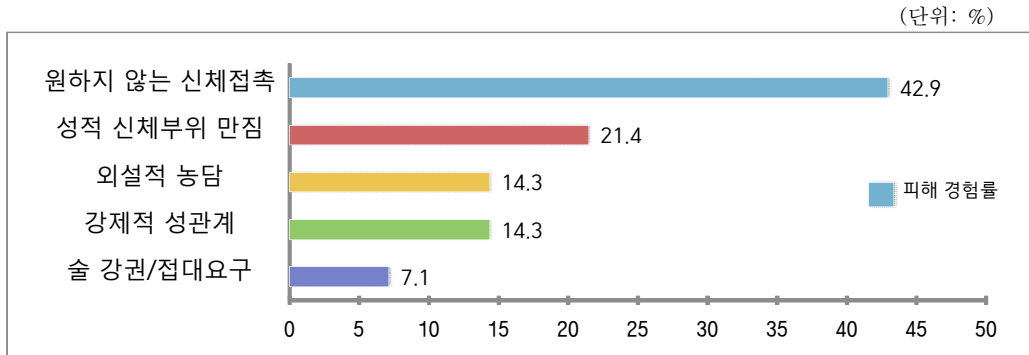


자료 : 소라미 외, 이주여성 농업 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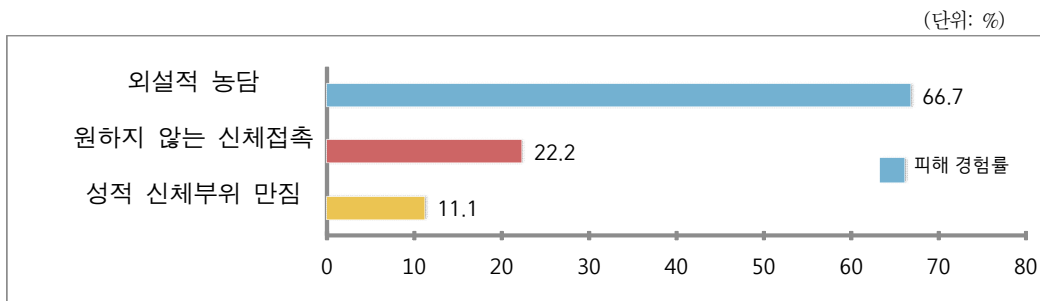
나. 성폭력 피해 유형

성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농산물 재배분야의 경우 상대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거나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42.9%), 성적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21.4%)가 주요 피해 유형으로 64.3%로, 선별·포장 등의 분야에서 외설적 농담(66.7%)이 가장 많은 것과 비교하면 농산물 재배분야에서 성폭력 피해가 더 심각하게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재배분야



〈그림 4〉 선별·포장 등의 분야



자료: 소라미 외, 이주여성 농업 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2016.

다.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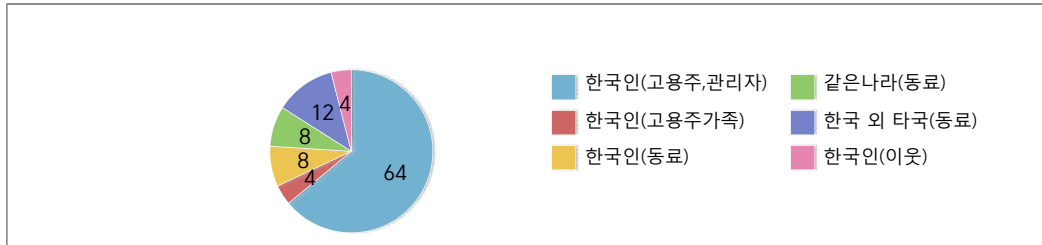
농촌의 많은 이주여성이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 피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중복적으로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최근의 경험을 중심으로 가해자의 출신국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가해자의 출신국은 한국(80.0%)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제3국출신⁴⁷⁾(12.0%), 이주여성과 같은 출신국(8.0%) 순이었다. 피해자와의 관계로는 한국인 고용주·관리자(64.0%)가 가장 많고, 한국 외 동료노동자(8.0%), 한국인 고용주 가족 등(4.0%), 한국인 이웃(4.0%) 순이었다.

47) 이하에서 ‘제3국출신’이란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보다 다른 국가 출신인 이주민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그림 5〉 성폭력 가해자 출신국 및 피해자와의 관계

(단위: %)



자료 : 소라미 외, 이주여성 농업 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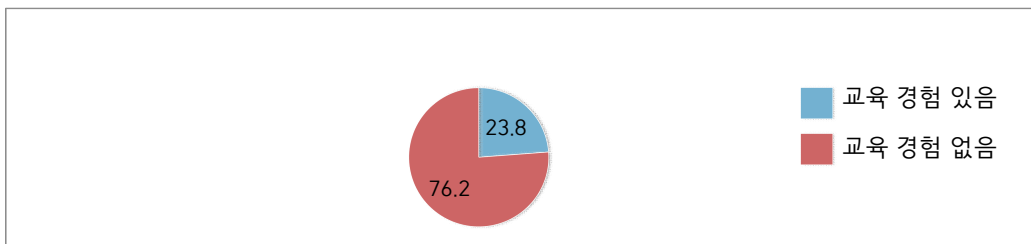
농업분야의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는 주로 한국인 고용주와 관리자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한국인 고용주나 관리자가 아니더라도 한국인 동료, 고용주 가족 등이 주로 가해자인 것으로 볼 때 이주여성이라는 이중적 취약성을 이용해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성폭력 피해 대응교육 경험

성폭력 피해 대응교육 경험에 대한 질문에 참여한 이주여성 농업 노동자 가운데 한국이나 본국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3.8%이며, 76.2%는 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이주여성이 본국에서 교육 받은 것 외에 한국에서 교육 받을 기회가 없어 성폭력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서 농촌 여성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림 6〉 성폭력 피해 대응교육 경험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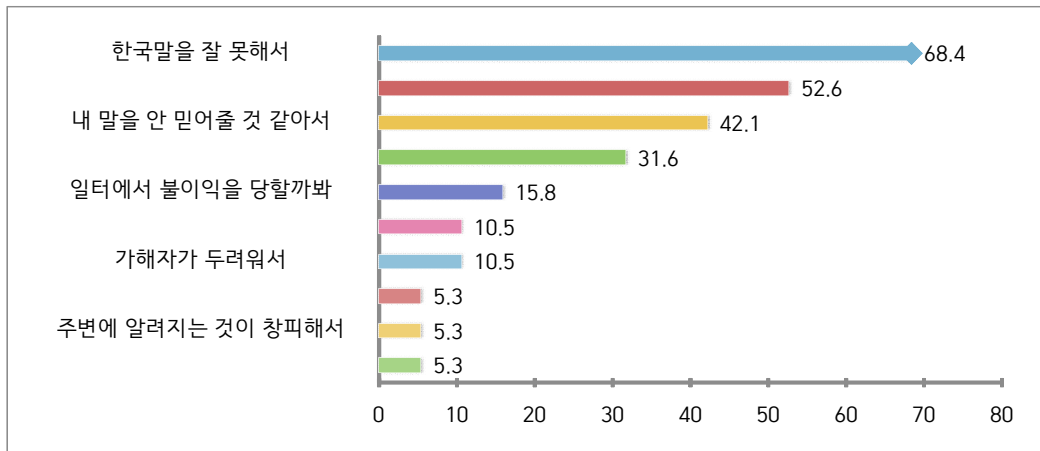
자료 : 소라미 외, 이주여성 농업 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2016.

마. 성폭력 피해 대응의 어려움

이주여성 농업 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대응에 대해 살펴보면 정보가 부족한 현실에서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성폭력의 중단과 피해 회복을 위해 적절하게 대응하기는 어렵다.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중복 응답으로 한국말을 못해서 68.4%,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52.6%로 매우 높아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도움을 받고자 해도 정보 부족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성폭력 피해 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단위: %)



자료 : 소라미 외, 이주여성 농업 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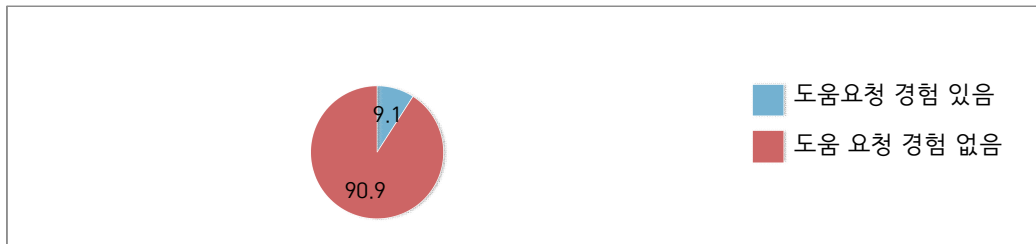
바. 공공지원체계의 지원 경험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주여성 농업 노동자들에게 성폭력 피해에 대해 경찰서, 고용노동부 등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90.9%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나마 도움을 요청한 기관으로는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에 요청하였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이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여성 농업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경로는 이주노동자 또는 이주여성 공공지원체계 외의 민간기관이나 개인인 경우가 더 많았다.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나 개인과의 연계는 대개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8〉 공공지원체계의 지원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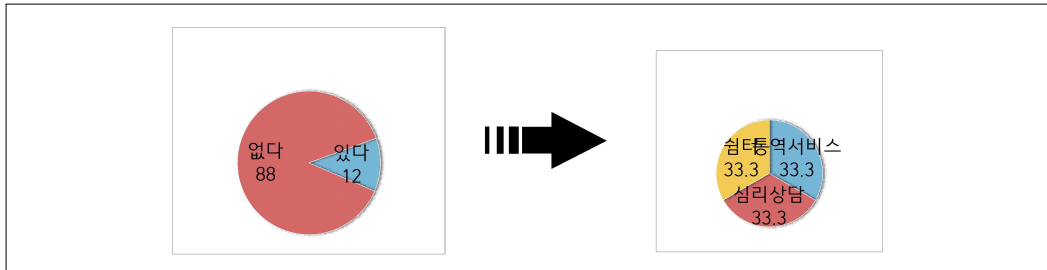
자료 : 소라미 외, 이주여성 농업 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2016.

사. 성폭력 피해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이주여성 농업 노동자들이 성폭력 피해 지원 경험으로 사건수사, 통역서비스,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심리상담, 쉼터, 또는 그 외의 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험은 12.0%에 불과하였다. 지원 서비스 내용으로는 통역서비스, 심리상담, 쉼터를 주로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이주여성 농업 노동자가 성폭력 피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 어렵고, 외부에 알린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에 연계되는 사례가 적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까지 도달하는 사례는 더욱 드문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성폭력 피해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및 한계



자료 : 소라미 외, 이주여성 농업 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2016.

성폭력 피해 지원 경험이 있는 활동가 면접에서 나타난 사실들을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한계를 알아 본 결과 이주여성 농업 노동자들은 다른 산업 분야보다 한국어 능력이 더 낮고 서둘러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원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지원체계 간 연계의 한계, 법률지원의 미흡 등이 나타난다.

이주여성 농업 노동자 역시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 피해 상담, 피난 시설의 보호, 의료 및 법률 지원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주여성 농업 노동자들이 이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는 드물다. 이주여성 스스로 지원체계를 찾아 도움을 청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초 접수기관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주여성을 위한 체계적인 통합지원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형사법 절차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정보의 부족, 체류자격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경찰 지원의 필요성은 크지만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실정으로 제도적 보완과 경찰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제2절 성폭력 피해 언론보도 사례 분석

이주여성들의 ‘미투현장’에서 거론된 가해자들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로 이주여성들은 성폭력 피해를 일상으로 경험하고 있다. 2017년 농업분야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33.8%를 차지하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등 인권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언어소통이 어려워 피해 신고를 하는 것조차 다른 사람을 통해야 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2018년 3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주여성들의 미투(#Me Too)’ 간담회에서 이주여성들은 성폭력 피해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여성이주노동자의 고용주는 이주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으나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근로위반, 임금체불 등을 증명⁴⁸⁾해야 하기 때문에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할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 보니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아래 제시하는 여성이주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사례는 언론보도에서 공개된 사례⁴⁹⁾로 일부는 농촌의 실제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여성이주노동자와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태를 확인하였다.

【사례1】 농장주에게 상습 성추행 당한 캄보디아 여성이주노동자 밀양 사례

경남 밀양에 있는 고추·깻잎 영농업자 박모씨가 캄보디아 출신 여성이주노동자들에게 1년 넘게 상습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을 가했다고 경남이주민복지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여성이주노동자 A씨는 박씨가 가슴·엉덩이·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살이 많이 찼다', '섹시하다'고 말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성희롱을 했고,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임의로 이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성추행·성희롱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가해자 처벌과 신속한 사업장 변경을 희망했다.⁵⁰⁾

4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49) 오마이뉴스(2018. 3. 12.), <http://www.ohmynews.com>(2018. 7. 20. 검색).

50) 한계레(2018. 8. 1.), 이주노동자들 성추행, 폭력에 신음...정부는 관리감독 손 놔, 14쪽.

【사례2】 한국인 형부에게 성폭행 당한 필리핀 이주여성 제주 사례

2016년에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이 결혼식에 친정가족을 초청했고 결혼식 45일 전에 입국했던 피해자는 결혼식 4일 전에 형부 될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남자는 필리핀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에서 발생했던 이 사건은 1심의 무죄를 깨고, 2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⁵¹⁾

【사례3】 농장주에게 성추행 당한 여성이주노동자 논산 사례

2016년 충남 논산에서 한 농장주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여성이주노동자의 방에 들어와 몸을 만지려했고, 장롱에 몸을 기댄 채 최대한 피하려던 여성노동자는 자신의 방을 뛰쳐나왔다. 같은 방을 쓰던 동료 여성이주노동자가 이 과정을 몰래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여 공개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⁵²⁾

【사례4】 농장주에게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한 캄보디아 여성이주노동자 포천 사례

캄보디아 출신 여성외국인노동자 멩 썸낭(가명)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년 5개월간 경기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하루 12시간 동안 채소를 재배하며 농장 인근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가건물에서 거주하면서 농장주의 끊임없는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동조건에 더해 농장주는 일한 지 3개월째부터 여성 노동자들의 숙소를 마음대로 드나들기 시작했으며, 이후 상습적으로 입맞춤을 강요했다. 5월에는 방에서 혼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어깨를 짓누르며 입맞춤을 강요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⁵³⁾

앞에서 서술한 이주여성의 성폭력 피해 사례들을 볼 때 농촌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성폭력 피해는 아직도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이 평범한 한국 남성들로 이주노동자 근무처의 사장, 농장주, 형부 등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당하고, 성추행과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도 어려운 성폭력 피해 입증과 사업장 이동의 어려움, 그리고 고용허가제의 연장에 따른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우려와 보복의 두려움으로 신고를 못하고 있다. 즉, 외국인이면서 여성으로 노동자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1) 시사제주(2018. 3. 14.),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146> (2018. 7. 4. 검색).

52) 한국일보(2018. 2. 20.), “얼마 줄까 내 와이프 해”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외국인노동자, <http://www.hankookilbo.com/v/cd7e83a21e3644578eb0700c8f12c5a5>(2018. 7. 20. 검색).

53) 한국일보(2018. 2. 20.), 앞의 자료, (2018. 7. 20. 검색).

제3절 소결

이와 같이 소라미 외(2016)의 ‘이주여성 농업 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토대로 농촌 여성이주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실태와 가해자의 특성, 성폭력 피해 대응의 어려움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과 한계 등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2017년 고용허가제 체류자격별 이주노동자 현황에서 전체 농업 이주노동자의 33.8%를 차지하는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성희롱 및 성폭력 위협에 환경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언어소통이 어려워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 농업 노동자의 성폭력 실태 조사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12.4%였고, 다른 이주여성의 피해를 들은 경험은 36.2%였다. 성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적 성희롱이나 가벼운 신체접촉, 강제추행, 지속적인 강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주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주로 이주노동과 관련되므로 농촌의 농장에서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성폭력 피해 대응 교육을 받은 경험은 23.8%에 불과하고, 성폭력 피해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 또한 매우 적었다.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이주여성의 형사절차상의 문제점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지원체계 간 연계의 한계, 법률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은 주변의 평범한 한국인 고용주나 관리자가 대부분이다. 피해를 입은 여성이주노동자는 고용주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사업장을 바꿀 수 없고 변경 가능한 상황이라도 성희롱, 성폭력 행위 등을 증명⁵⁴⁾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할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 보니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다른 산업분야보다 한국어 능력이 더 낮고 서툴러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원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체계 간 연계의 한계, 법률지원의 미흡 등도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노동자가 도움을 요청한 곳이 경찰서가

5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아닌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국 초기의 여성이주노동자를 지원하려면 무엇보다 언어소통이 필요하지만 경찰의 외국어 능력의 한계와 다양한 언어의 사법 통역관 운영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주여성들과의 원활한 언어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과제로 남는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주로 가정폭력 문제 등 결혼이민자에 초점을 맞춰 치안활동을 추진해왔기에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농촌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부족해 왔음을 인식하고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여성이주노동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는 보다 쉽게 경찰서에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수사 이후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제4장 심층면접 조사 및 결과 분석

제1절 심층면접 조사

이 연구는 농촌지역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성폭력 피해가 심각하다는 선행 연구보고서와 이주여성의 성폭력 피해 실태가 언론에 종종 보도되면서 경찰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행하게 된 것이다. 농촌지역 여성이주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실태와 농촌지역에서 경찰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실증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지역으로는 통계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여성이주노동자가 다수 거주하며 농업지역인 경기 평택지역, 충남 아산·논산지역, 경남 밀양지역, 그리고 여성이주노동자가 다수 거주하며 계절근로제를 도입하여 활성화하고 있는 충북 음성지역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대상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여성이주노동자, 현장 전문가,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경찰 지원 실태 및 문제점을 탐색하고 여성이주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의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심층면접 조사이다.

1. 조사 대상자

조사 대상자로는 먼저 이주노동자의 증가 원인인 고용노동제와 계절근로제의 이주노동자 도입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지자체와 농협의 업무 담당자 2명을 면접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주여성 지원 현장 전문가 6명과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이주노동자 및 통역 6명, 그리고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현장 경찰관 6명 등 총 20명을 심층면접 조사하였다.

〈표 19〉 조사 대상자

연번	구분	대상자	소속(국가)	비고
1	현장 전문가 (8)	전문가A	• 외국인복지지원단체	
2		전문가B	• 이주여성지원단체	
3		전문가C	• 이주노동자지원단체	
4		전문가D	• 지자체 이주여성 담당자	
5		전문가E	• 지자체 계절노동자 담당자	
6		전문가F	• 농협지부 고용노동자 담당자	
7		전문가G	• 이주여성지원단체	
8		전문가H	• 농협 고용노동자 담당자	
9	여성이주 노동자등 (6)	이주여성A(통역)	• 베트남	
10		여성이주노동자B	• 베트남	
11		여성이주노동자C	• 몽골	
12		여성이주노동자D	• 캄보디아	
13		여성이주노동자E	• 캄보디아	
14		이주여성F(통역)	• 캄보디아	
15	현장 경찰관 (6)	경찰관A	• 경기 00경찰서	
16		경찰관B	• 충남 00경찰서	
17		경찰관C	• 경기 00경찰서	
18		경찰관D	• 충남 00파출소	
19		경찰관E	• 충남 00경찰서	
20		경찰관F	• 경남 00경찰서	

2. 조사 방법 및 조사 내용

조사 방법으로는 2018년 6월 5일~10월 5일 까지 4개월간, 경기, 충북, 충남, 경남 4개 도지역의 5개 시·읍·면의 이주여성 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농협, 경찰서, 지구대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주여성글로벌센터 등 이주여성이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부근 카페, 아시안마트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심층면접 조사를 하였다.

심층면접 조사는 시간 관계상 반구조화 된 면접지를 먼저 메일이나 메신저로 전달하여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내용을 청취하여 기록하거나 녹음하는 형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심층면접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전화 또는 e-mail, 경찰 폴넷(POL-NET)의 메신저를 통해 자료를 제출 받거나 해당기관 홈페이지 자료를 찾아 보완하기도 했다.

조사 내용으로는 농촌지역 이주노동자 증가 실태 파악을 위해 먼저 이주노동자 경로별 도입절차와 다수 배치지역 및 여성이주노동자 수요 농산물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여성이주노동자의 범죄피해 실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실태, 농촌지역 이주노동자 범죄예방교육과 정보제공 실태, 농촌지역 현장경찰의 지원 실태와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제2절 결과 분석

농촌지역 여성이주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실태 등 문제점과 경찰의 대응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주여성 농업 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와 각종 언론에 보도된 농촌지역 여성이주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자료를 토대로 반구조화한 질문지를 심층면접 조사에 활용하였다.

조사한 내용은 이주노동자 도입 경로 및 절차, 여성이주노동자 다수지역의 환경적 특징, 성폭력 피해 실태, 대응 실태, 범죄예방교육, 정보제공, 현장경찰의 지원 실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등 8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이주노동자 도입 경로 및 절차

농촌지역의 여성이주노동자는 국제결혼으로 이주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를 통해 이주한다. 비전문취업(E-9)비자로 입국하는 고용허가제와 단기취업(C-4)비자로 입국하는 계절근로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절차 및 교육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농촌 현장에서 고용노동제 업무를 담당하는 농협지부 농정지원단 담당자(전문가 E)와 계절근로제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팀장(전문가F)을 심층면접 조사한 결과이다.

가. 고용허가제(E-9)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는 2018년 10월 현재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16개국이다. 이 중에서 농업분야는 네팔, 태국,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5개국에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용자가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 고용은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자국 인력으로 필요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가능하며 이주노동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의 이주노동자는 부족한 현실로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 고용노동자 도입 규모 및 배정 시기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에 의한 일반 외국인 노동자(E-9) 도입 규모는 56,000명 정도로 신규 인력이 45,000명, 재입국자가 11,000명 정도이다. 이 중에서 2,000명 정도는 고용허가서 발급할 때 업종별 외국인력 신청 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배분하며 농·축산업은 전체 약 6,600명 정도에 약간 추가 인원이 더 증가할 수 있다.

〈표 20〉 2018년 업종별 도입 규모(E-9)

총 도입 규모(명)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56,000 [54,000+ α (2,000)]	42,300+ α_1	6,600+ α_2	2,600+ α_3	2,400+ α_4	100+ α_5

자료: 농협 내부자료

농협 고용노동제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 및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농·축산업 분야의 외국인 인력 배정시기와 배정인원은 아래 〈표 21〉 과 같다. 농·축산업 분야 신규 인력은 5,870명 정도로 재입국자와 추가 인원까지 포함하면 총 6,600명이 넘을 것이다.

배정 시기는 1·4·10월 세 번이며 재입국자는 수시로 배치한다. 제조업은 인원이 많아 1·4·7·10월에 도입되는데 상반기에 60% 정도 도입하고 있다. 어업과 건설업은 1·4·7월, 서비스업은 1·4월에 도입하고 있다.

〈표 21〉 2018년 농축산업 분야 외국 인력 도입 현황

구분	배정시기	배정인원(명)	비 고
신규 인력	1월	2,610+ α	
	4월	2,610+ α	
	10월	650	
재입국자	연중 수시	730	
총 계	6,600= 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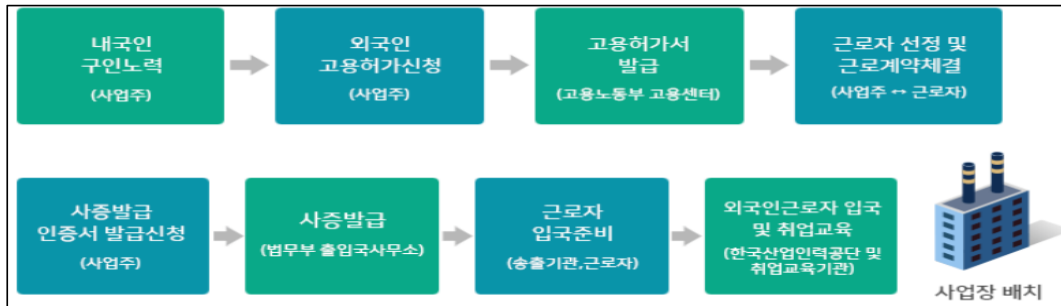
자료: 농협 내부자료

외국인 고용노동자 신규 인력쿼터 배정에 대해 내부 문서에 의하면 계절적 수요를 반영하여 노동자가 가장 많은 제조업은 42,300여명을 상·하반기 6:4 비율로 배정하고, 농·축산업은 전체 약 6,600명 정도에 약간 추가 인원이 더 증가할 수 있어요. 외국인 고용노동자 신규인력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축산업분야는 주로 1월, 4월, 10월에 세 번 고용허가서를 발급해서 배치하는데 농촌이 바쁜 시기인 상반기에 집중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도입되고 있어요. (전문가 E)

2) 외국인 노동자(E-9) 채용 절차⁵⁵⁾

고용허가제에 있어 농장주 등 사업주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 절차를 알아보면 아래 <그림 10> 과 같은 절차로 이뤄진다.

<그림 10>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E-9) 채용 절차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외국인고용지원'

이주노동자의 도입은 대행기관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사업」으로 사용자와 대행기관간 업무 대행계약을 작성하여 이주노동자 고용업무 대행 신청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농업의 경우 농촌의 일손 부족을 돕기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도입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위의 <그림 10> 과 같이 모든 절차에 따라 도입이 결정되고 송출국가에서 사전취업교육 등 입국준비를 거쳐 이주노동자가 입국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대행기관에서 취업교육 후 각 사업장(농장)에 배치한다.

3) 사전 취업교육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고자 하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전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취업능력 배양 및 국내 조기 적응을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 대해 본국에서 입국 전에 먼저 취업교육을 실시한다.

사전 취업교육 시간은 총 45시간으로 교육 내용은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55)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2018. 10. 2. 최종검색).

의 이해 등이다. 즉, 한국어 교육 38시간, 한국문화의 이해 7시간 등 한국어 능력시험 및 수습 적용 여부에 따라 1주~2.5주간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 38시간으로는 한국생활에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언어 소통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전교육을 받고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범죄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못하는 등 피해 대응의 어려움이 이주여성의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표 22〉 이주노동자 사전 취업교육 시간 및 내용

구 분	교육 시간
총 계	45시간
한국어교육	38시간
한국문화의 이해	7시간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이주노동자의 사전 취업교육은 송출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며 정부부처의 관리 감독을 받는 송출국가 공공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기관은 송출국가에서 추천하는 훈련기관 중 한국의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⁵⁶⁾

처음 입국할 때 한국어 시험보고 들어오지만... 책으로만 공부해 시험 보는 거예요. 책으로 공부하다 보니... 처음에 말 못해요. 한국에서 1년 이상 오래 지나야 말을 듣고 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말 안 통하니까 사장님들하고 문제가 자꾸 생겨요. (이주여성 F)

4) 취업교육

이주노동자는 송출기관 관계자의 인솔 하에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심사를 마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한다. 모든 이주노동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입국 후 취업교육을 받게 된다.

송출국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한 모든 이주

56)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3/3/3/3/1>), (2018. 10. 2. 검색).

노동자는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취업교육은 <표 23> 과 같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농협 등 민간대행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표 23> 이주노동자 산업별 취업교육기관

구 분		취업 교육기관	
외국국적 동포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 외국인	제조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재료수집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	몽골, 베트남, 태국	노사발전 재단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중국, 동티모르	중소기업 중앙회
	농업축산업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농협중앙회
	수산업	수협중앙회	
건설업	대한건설협회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농·축산분야의 교육은 민간 대행기관인 농협⁵⁷⁾에서 담당하며 2013년부터 해마다 6천여 명의 노동자를 교육시키고 있다. 교육기간은 2박 3일 동안 16시간 이상을 집체교육으로 한다. 교재는 취업교육용 교재 및 동영상 자료,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 보조교재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교육은 해당국 언어를 지원하여 진행한다.

취업교육 내용은 크게 소양교과(3과목)와 전공교과(1과목)로 나뉘어 진행하고 있다. 소양교과로는 한국어 회화, 한국의 직장문화, 관계 법령 및 고충상담 절차를 교육하고, 전공교과로는 산업안전보건 및 기초기능 등을 하게 된다.

57) 정부가 지정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도입기관」이다.

〈표 24〉 이주노동자 취업교육 내용

과 목	주요 교육내용	교육시간
한국어 회화	취업현장 중심 기초 회화	2시간
한국의 직장문화	직장생활, 직장예절 및 기숙사 생활 등	2시간
관계법령 및 고충상담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및 기초생활법률 * 이탈방지 교육, 전용보험 관련 교육 포함	4시간
	고충처리 및 상담절차(기관 안내), 성희롱 예방교육 * 성폭력·성매매 예방, 모성보호 교육 포함	2시간
산업안전보건 및 기초기능	<산업안전보건> 안전표지, 안전일반 및 작업안전(업종별) *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대책 포함 <기초기능> 농업기초기능 등	6시간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농업분야에 해당하는 국가는 5개국⁵⁸⁾이 동시 입국하거나 2개국 또는 3개국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나라별 입국 계획에 따라 수시로 입국하고 있어요. 연초부터 상반기에 주로 많이 입국하여 150명~180명까지 입국해요. 특히 5~6월은 180명까지 입국하기도 합니다. 교육은 통역을 붙여 교육을 하고 있어요. 나라가 2개국 정도면 순차적으로 번갈아 가며 통역을 해가면서 교육을 하고, 5개 국가가 10명 미만이면 각 나라마다 개별 통역이 따라 붙어요. 평균 한번에 120명 정도 교육하고 있어요. 교육 커리큘럼은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지정되어 있구요. 대행기관에서는 그에 따른 교육만 하는 거죠. 교육 중간을 활용하여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교육을 하면...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은 돼요. 교육과정 자체 변경은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구요. (전문가 H)

이주노동자가 인천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마치면 농협중앙회에서 인솔하여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인 한국지도자아카데미와 한울유스센터에서 2박 3일 동안 16시간 이상의 집체교육을 받는다.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은 위에서 기술한대로 고용노동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국 언어 통역을 지원하여 진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취업교육 마지막 날 이주노동자는 건강검진,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58) 농업분야는 네팔, 태국,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5개국에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고 있다.

봉급계좌를 개설한 다음 농업인에게 직접 인도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노사발전재단 여주교육장과 영남지역(한국노총 구미지부), 호남지역(한국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인도하고 있다.

농업인은 이주노동자의 취업교육이 끝나면 근로자 인수확인서에 날인하고 노동자를 직접 인수하기 전에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용자 교육을 받는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지침 및 근로자에 대한 이해 제고, 고용허가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1시간 교육을 받고 인수한 이주노동자를 사업장에 배치하여 근로를 시작한다.

외국인 고용노동자가 한국에 입국한 후 교육은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국지도자아카데미에서 받거나 제조업 근로자가 받고 있는 화성에 있는 한울유스센터에서 받아요. 예전에는 교육이 끝나면 농장주들이 직접 경기도에 와서 인솔해 갔는데 올해부터는 농촌이 바쁘고 거리도 먼 지역 농민들을 위해 농협에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중간지점까지 버스로 직접 데려다 주고 있어요. 농협 직원들은 바쁘지만 농민들의 반응은 무척 좋아요. (전문가 H)

초기입국 이주노동자의 교육시간이 최종 16시간(2박3일)에 지나지 않고 재입국자의 경우에도 교육시간이 7시간(1일)에 해당하는 등 교육시간이 많지 않아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농촌 여성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전문가의 심층면접 내용에 의하면 농촌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선 경찰의 범죄예방교육 또한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교육대행기관인 농협과 MOU를 통해 입국 초기 취업교육 과목에서 2시간 배정된 고충처리 및 상담절차,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시간을 활용하여 경찰에서 정기적인 범죄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신고요령 및 신고전화번호 등 팸플릿을 5개 국어로 제작하여 입국 초기에 제공한다면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계절근로제(C-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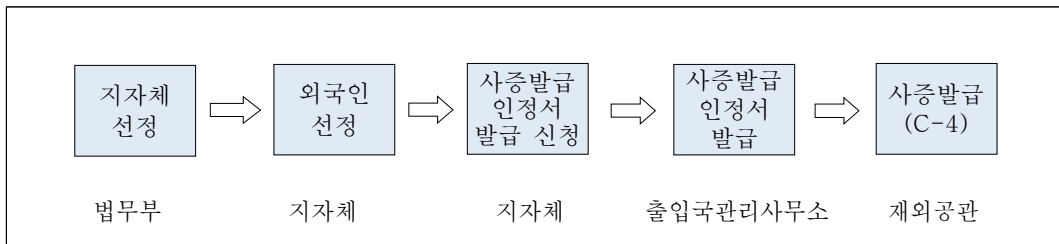
1) 도입 절차

농업분야 계절노동자 도입은 개별 지자체에서 자매결연 맺은 외국의 지자체 주민 또는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중에서 법무부 기준에 맞

는 외국인을 선정하여 법무부에 계절노동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한 후 승인받아 단기취업(C-4)비자로 입국한다.

계절노동자의 입·출국, 근무 등은 모두 해당 지자체에서 책임 운영한다. 계절노동자 도입 절차는 아래 〈그림 11〉과 같다.⁵⁹⁾

〈그림 11〉 계절노동자 도입 절차



2) 계절노동자 교육

고용노동자의 도입과 교육은 대행기관인 농협에서 이뤄지는데 비해 계절노동자는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상·하반기 2회 품목별 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법무부에 배치 신청을 하면 법무부의 승인을 받은 인원에 대해 해외 지자체에 구직, 인원 모집을 요청한다.

구직을 원하는 외국인으로부터 여권사본, 보증서류, 출국각서 등 구비서류를 받아 신원확인 결과 문제가 없으면 비자신청 포털사이트로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하고 사증발급번호가 나오면 해당 외국의 지자체에 시스템으로 통보한다. 계절노동자는 건강검진과 사전교육을 받고 입국하게 된다. 지자체에서는 국내 입국 일에 이주노동자를 직접 공항에서 인도해온 후 오리엔테이션과 농장주와 상견례를 마친 후 농가에 배치한다.

계절노동자 배치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서 협의를 하여 C-4(단기취업비자)로 90일간 비자를 발급하구요, 먼저, 지자체(군청)에서 자체 수요조사를 상·하반기 두 번 하는데요, 먼저 품목별 수요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배정인원 한도 내에서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요. 세 번째는 해외 지자체에서 구직, 인원 모집 요청을 합니다. 네 번째는 담보가 될 만한 것... 출국각서 등 보증서류와 여권, 비자 등 관련 서류를 받아 확인한 후에 영사관에 비자신청 포털사이트가 있어서 군청에서 비자신청 사이트에 신청을 하면

59) 엄진영 외, 앞의 논문, 2017, 39쪽; 지자체 계절근로제 업무 담당 전문가 F 심층면접 자료.

사증 발급번호가 나와요. 그러면 해당 외국 자치단체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건강검진 등을 받고 사전 교육과 연수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면 지자체에서 인수하여 오리엔테이션과 농가 주와 상견례 및 농작업 요령,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고 농가로 배치되어 과수, 시설 채소 재배 등을 하게 돼요. **(전문가 F)**

2016년 충북 괴산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절임배추에 계절노동자를 들여왔다. 한국어가 서툴고 고용허가제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더 심각한 노동착취와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노동·인권단체의 반대에도 농업인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계절근로제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연구 지역인 충북 음성지역에서는 2017년 상·하반기 중국에서 26명을 들여왔는데 반응이 좋아 2018년 5월 필리핀 산 레오나르도(San Leonardo)를 방문, 양국 자치단체 간 농업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계절노동자 사업을 확대하여 하반기에는 중국과 필리핀에서 33명을 농가에 도입한 바 있다.

충북에서 계절노동자를 배치한 것은 2016년도에 괴산에서 처음으로 배치를 했어요. 처음 괴산 절임배추에 계절노동자를 들여왔고요. 저희는 2017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 13농가에 26명이 왔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올해는 상반기 3농가 8명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배치했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5월 필리핀까지 확대하여 산 레오나르도(San Leonardo)를 방문했었어요. 양국 자치단체 간에 농업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해서 중국 용정시 외에도 필리핀과 자매결연 하고 계절노동자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요. 하반기에는 중국 계절노동자 외에도 필리핀 노동자 31명은 농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한 11농가에 배치하여 10월까지 3개월간 과수원이나 시설채소 농가에 배치해서 모두 33명을 배치했어요. **(전문가 F)**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만성적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에 계절근로제(C-4)는 국내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외국의 자매결연 도시로부터 외국 인력을 도입하여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로 외국인 신원보증이나 관리·감독 측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기존 고용허가제(E-9)와 제도로 중복되고 인력 공급 규모를 통제하는 장치가 부실하다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농촌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계절노동자 배치신청은 농가의 수요 조사를 받아 군청 담당 직원이 신청을 하고 있어요. 농촌 일손 문제가 심각하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농촌인력 증개역할, 즉 한마디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 신청을 시스템으로 신청해 주는 등 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지자체 담당직원이 직접 공항에 나가서 데려와요. 직접 공항에 가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 오기도 하다 보니 사실 어려움이 많아요.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지자체(군청)에 데려오면 교육을 시켜서 농가에 당일 바로 배치합니다... 담당자가 인천공항까지 직접 나가서 데려와요. 해당 지자체(군청)에 데려와서 군청 교육실에서 사업주(농장주)와 이주노동자와 함께 필요한 사항,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는데 언어 문제가 있어 대부분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시킨 후에 농가에 배치를 하죠. 당일 교육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범죄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이라면 약간의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 인 노동자와 농장주를 하루에 같이 간단히 교육을 하고 있어서요. (전문가 F)

농촌 지자체 계절노동자 업무 담당자는 이주노동자와의 언어소통이 가장 큰 문제점임을 들고 있다. 계절노동자의 도입 인원이 50명 이상이면 통역을 채용하게 되어 있으나 한 번에 많은 인원을 도입하지 않고 여러 나라에서 소수 노동자가 입국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해당 언어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지자체에서도 언어 소통의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토로한다. 반드시 통역이 필요할 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주노동자지원센터 등에서 지원을 받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면담결과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계절노동자 배치 전 교육이 당일 교육에 모국어로 이뤄지지 않고 이주노동자와 농업인을 같은 장소에서 교육하는데 대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자치단체는 임기제라도 고용해서 통역을 확보하라고 하는데 현재 계절노동자가 50명이 안돼요. 현실적으로 통역을 채용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죠. 현재 통역인이 없어서 주로 만들어 놓은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소개하고 나눠주고 있어요. 다른 간단한 언어는 번역기를 통해 소통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간단한 말이 통하는 정도이고 깊이 있는 대화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다문화지원센터가 2군데가 있는데 이곳의 협조를 받아 통역을 할 때도 있어요. (전문가 F)

그것을 교육시키는 데가 어디냐면... 잠깐 3개월로 들어오는 사람(계절노동자를 말함)은 교육 안 받아요. 하우스에서 1년 됐고, 2년 됐고, 길게 하우스에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고용노동자를 말함) 노동부에 올 때 거기서 교육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3~4개월 오는 사람들은 안 시켜요. 그래서 교육을 못 받아요. (여성이주노동자 C)

지자체에서는 이주노동자 도입업무를 대행하고 이주노동자와 농장주의 상담을 처리하는 등 계절노동자 업무의 증가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가끔 이주노동자가 농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면 다음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데도 현실적으로 이주노동자 관리는 쉽지 않다.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 예방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경찰에서도 계절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반 문제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들어 왔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90일 정도로 들어오는데 고용노동부, 법무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하기도 해요. 농촌에서 인력확보 요구를 하면 법무부에서 인원을 배정해 주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어지면 다음해 배정에서 20~50%까지 인원을 감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

어요.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가 문제가 있으면 강제 출국도 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농장을 이탈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가기도해요. 불법체류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해 계절노동자 배정 인원을 줄이니까 문제가 되죠.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고 가끔 일도 발생하지만 법무부에서 계절노동자 T/F 팀을 마련해 놓아서 어떤 일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T/F팀과 협의하여 조치하고 도움도 많이 받고 있어요. 계절노동자는 체류관리나 고용조건 준수 등 고용노동부와 군청에서 현지점검을 통해서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상담도 받아서 처리해 주기도 하고 범죄문제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인계하고 있어요. 합동점검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현장 점검을 나가고 있어요. **(전문가 F)**

농촌에서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다보면 문화 차이로 불편함도 있고 가끔 이주노동자가 이탈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이주노동자는 귀국했다 재입국할 때는 일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저렴한 임금으로 농촌의 반응이 좋아 도입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에 계신 분들이 고령자로 일하기 어려운데 외국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보면 문화차이로 속을 썩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좋다는 반응이구요. 어떤 사람은 가족처럼 잘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외국인노동자는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다가 다음에 또 데려오기도 해요. 그러면 농사일을 다시 가르치지 않아도 되니까. 농촌에서는 엄청 좋아하죠. 일하기도 힘든데, 일도 잘하니까. 고용노동자는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는 있지만 농촌에는 일이 항상 똑같이 있는 게 아니고 일이 많을 때는 많고 없을 때는 없기도 하니까 고용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농사 일이 힘들다 보니 대부분 재조업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절노동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5월에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캄보디아도 직접 방문해서 외국기관과 이야기하면서 농업 환경도 둘러보고 점점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계절노동자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하지만 농촌의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전문가 F)**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거나 지자체 협약 등을 통해 입국하는 계절노동자와 처음 배치된 농장에서 일을 성실하게 마치고 귀국했다 재입국하여 동일 농장에 배치되는 계절노동자들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고용노동자의 경우 한국에 입국할 때 용역업체가 개입하여 수수료를 지불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받아도 수수료와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면 돈이 없어 경제적인 이유로 체류기간 경과 후에도 불법체류자로 남게 되는 경우가 있다. 불법체류자로 남은 이주노동자들은 범죄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못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는 것을 이주노동자의 면접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다. 경찰에서는 고용노동자 도입과정에 용역업체(브로커)의 개입으로 이주노동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심과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계절노동자 있어요. 지역마다 달라요. 그 사람들은 주로 3개월 들어오고 이주여성 가족들이 초청해 줘 일해요. 계절노동자들은 친척, 결혼이민자들이 초청해서 문제없어요. 오히려 안전해요. 제가 엄마, 아빠, 동생을 모시고 오면, 제가 챙겨야지…….이 사람들은 교육 안 해도 돼요. 근데 불법체류자가 가장 문제예요. 업체들에 돈을 주고…….많이 주고 오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그러니까 생활비 빼고 나면 얼마 안 남아요. 끝나고 나면 어떻게, 어떻게 하다보면 돈을 못 벌어요.…… 결국 불법 체류자로 남는 거죠. (이주여성 A)

계절노동자가 예전에 한번 왔다 간 사람이 일을 잘하면 다음에 초청하여 또 오기도하고 다문화 가족들이 자기 가족이나 친척들을 초청해서 한국에 계절노동자로 들어오는 경우는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아요. 본국에 가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서로 연락도 하고 모르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범죄 피해도 크게 당하지 않고 쉬는 날에는 서로 만나고 모여서 놀기도 하니까 덜 외롭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또 다른 경우는 외국 도시와 농업 연수 형식으로 초청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므로 계절노동자 도입은 교류 협력이 있는 외국 지자체와 대부분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남아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이 애매하다 보니 계절노동자 도입에 용역(브로커)이 개입하기도 하고, 용역이 개입하면 수수료 문제가 크고 정부에서는 원하지 않고 있어요. (전문가 F)

2. 여성이주노동자 다수지역 및 환경적 특징

여성이주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환경적 특징을 살펴보면 농촌 특성상 대부분 과수원이나 채소재배 등 농업이 많은 군·읍·면 단위의 넓은 지역에 흩어져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 평택지역은 주한미군 주둔지역이며 평택항이 있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사경찰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장 경찰관의 면담 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외사인력으로는 평택항 교대근무를 제외하고 실제 외근 인력이 부족해 농촌의 이주노동자까지 치안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이주노동자가 많은 지역은 포승, 오성지역으로 토마토, 상추 싹 채소와, 버섯 등을 다수 재배하고 있다.

평택에서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진위면, 오성면 일대에 외국인이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상추나 싹 채소류 등 채소와 버섯도 많이 재배하고, 양계장에서 닭을 많이 키우기도 해요. (전문가 A)

충남 아산지역은 제조업 등 생산업체와 농업이 혼합된 지역으로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신창지역이다. 이곳은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제조업에 다수 종사하고 있다. 농업지역으로는 둔포, 영인, 음봉, 배방지역에

베트남 여성이주노동자가 많은데 결혼이주여성의 친정부모를 초청하거나 단기 방문으로 들어와 일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 지역에는 호박, 오이, 토마토, 배 과수원 등에 여성이주노동자가 많으나 기숙사가 불결하고 주거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외국인이 신창, 둔포, 그리고 도고.....도고는 생산근로자들...공장들이 많아요. 근데 농업인은 농업을 하는 곳은..... 배방, 배방에서는 호박, 오이, 가지 농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창하고 둔포는 근로자들이고요. 농업이 많은 지역은 배방이 제일 많아요. 엄청 많아요. 버섯 하는데 송악 가는 길에 있었어요. 보니까 기숙사도 지저분하고 좋은 환경이 아냐. 엄청 지저분하고 진짜...오는 이주여성들이 자기 베트남에서 노출 안 되니까, 환경이 파악 안 되지... 요즘 누가 저렇게 살겠어요. 기숙사 환경이 좋지 않은 데가 많아요. (이주여성 A)

충남 아산에는 농업에 이주노동자가 많아요. 둔포나 음봉, 영인에도 많아요. 배방에도 많아요. 저는 둔포에 꾸준히 살고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쪽 13년 동안 살고 있어요. 농사를 많이 짓고 있어요. 주로 배과수원을 많이 해요. 주로 작업은 토마토, 오이, 수박, 호박, 벼농사, 배 과수원이 많은 거 같아요. (여성이주노동자 B)

아산시에는 외국인이 1만 6천 명 정도, 약 5%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곳은 신창이나 둔포가 많은데 신창은 회사, 공장들이 많은 것 같아요. 둔포나 배방 쪽이 농사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국적별로는 아산에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신창 쪽에 가족들과 같이 들어와 많이 거주하고 있고 농업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많아요. (전문가 B)

충남 논산지역은 대부분이 농업지역으로 주로 양촌, 성동, 연무지역에 몽골, 태국 이주노동자가 많아 앞의 사례와 같이 성폭력 피해가 가끔 드러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겨울에는 딸기, 여름에는 수박, 토마토 재배에 투입되고 있다. 비닐하우스 딸기가 수확되는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여성이주노동자의 노동력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몽골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여기, 유통센터라고... 농촌에서 수박이나 딸기 같은 것을 가져오면 우리가 포장해가지고 납품해요. 00마트나... 마트 같은데 납품을 해요, 그러면 이쪽 지역 이주여성이나 노동자, 같이 포장을 해서.....같이 일하는 거죠. 겨울에는 딸기 철이라서 사람이 많아요. 1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나와요. 딸기야.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일하는 거죠. 집에서 농사짓는 사람들도 일 없을 때는 여기 와서 일을 하다가 가요. (여성이주노동자 C)

제가 보면... 논산 시내에 사는데 이주노동자들이 정말로 많이 살아요. 터미널 부근에 원룸이 많은데 러시아 쪽 남자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죠. 농촌지역으로는 특히 양촌과 성동이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데 논산은 순수한 농촌지역이라 전반적으로 골고루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양촌 면에는 딸기, 상추 같은 농사를 많이 하구요. 성동에는 수박이나 방울토마토....연무에도 딸기가 많아 나요. 거기에 여성이주노동자가 많죠. (전문가 C)

경남 밀양지역은 여성이주노동자의 70% 이상인 500여명의 캄보디아 여성이주노동자가 ‘깻잎농사’에 투입되어 일을 하고 있다. 깻잎농사 외에 삼량진에서는 딸기재배와 채소재배, 고추따기 등을 주로 한다. 앞의 피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성폭력 및 인권문제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지역이다. 연구자가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여 여성이주노동자와 현장 경찰관의 면담을 통해 실태를 확인하였다.

밀양시는 16개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5개 동을 제외한 11개 읍·면, 전 지역이 농촌지역으로 여성이주노동자가 주로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를 하고 있어요. 전 지역에서 깻잎을 재배하고 있고, 삼량진읍에는 딸기, 무안면에는 고추를 재배하고, 계절에 따라 수박, 포도 등을 번갈아 가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현장 경찰관 F)

우리 시 농촌지역엔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주로 캄보디아 여성이 많습니다. 청도나 밀양지역에 많은 여성들이 일하고 있고요. 깻잎, 배추, 마늘, 고추 따기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D)

충북 음성지역은 제조업 공장 밀집지역으로 이주노동자가 매우 많은 지역이다. 농촌에서는 복숭아, 사과 등 과수원과 시설하우스의 채소재배에 일손이 부족하여 지자체에서 계절노동자 도입을 확대해 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음성에서는 대소나, 금왕 농업 하는 곳에 외국인이 많아요. 농업뿐만 아니라 공장이 많다 보니 정말로 외국인이 많은 것 같아요. 외국인 여성들은 주로 과수원... 시설재배(하우스), 채소 농사를 짓는데 특히 시설에서 하는 수박, 토마토, 오이, 호박 등 시설재배에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전문가 F)

이와 같이 여성이주노동자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지역의 특징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경기, 충남, 충북, 경남지역에서 여성이주노동자들은 과수원의 과일 농사, 시설하우스 채소, 딸기, 토마토, 오이, 깻잎, 고추 등 여성의 손길이 필요한 작물에 배치되어 노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피해 실태

가. 여성이주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실태

한국에 입국한 기간이 오래된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입국초기에 성폭력, 성희

통이 더 심각했다는 것을 면담 결과로 알 수 있다. 면접자 대부분이 경미한 경험이 있거나 지인이나 동료들한테 간접적으로 들었던 경험이 다수 있다고 응답했다. 입국초기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언어 소통이 어렵고 정보가 부족하거나 비자연장에 피해가 있을까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농촌에서도 이주노동자를 위해 인터넷을 설치해 주고 이주노동자들은 스마트폰이나 자국민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얻거나 서로 피해를 공유하며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농장주에 의한 성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끼리 타국에서 일탈문제가 폭력이나 강력 범죄로 확대되는 사례도 있다. 입국초기 정보가 없는 여성이주노동자는 한국생활이 오래된 자국민 동료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등 피해 형태는 다양화 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외국인이라는 편견 때문에 피해를 더 당하게 되고 대부분 사건을 합의하고 원만하게 종결하려 한다며 한국 사람과 동등하게 적극적으로 처리해주길 바라고 있다.

처음 한국 왔을 때, 6년 됐어요, 베트남 친구들 많은데 당한 게 많아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나이는 45살 정도.. 자꾸 이상한 얘기 했어요. 제가 신고를 할까 하다가... 그 친구가 무서워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중에 비자... 비자 연장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고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래도 불안해서, 서류도 복잡해지고 나중에 회사에서도 ‘이런 게 있었구나. 나중에 출입국에 가셔도 안 좋거든요. 자꾸 문자하고, 일하다가 맨날 언어폭력하고..... 언어폭력만 아니고 메시지도 보냈어요. “한번 하자. 한번 해줘”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 말라고” 노동자라서 무서워서 신고를 못했어요. 그 사람 지금은 3년 돼서 베트남 돌아갔어요. (여성이주노동자 B)

사실 2~3년 정도 전에 사건이 있어서 통역으로 가봤는데요. 00에 사건이 나서 버섯농장에 가봤는데요. 버섯농장 일하는 근로자들이 환경 안 좋으니까 남녀가 가까워지니까...끼리끼리 살기도 하고요.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 안한 사람도 있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일이 많아요. (사건은 어떤 내용인가?) 버섯농장에서 여자들이 몇 명 있어요. 한, 두 명 있고, 남자 몇 명이서 좋아하고, 같이 살고.. 그리고 때리고 싸우고 난리였어요. 사장님이 해결 안 되니까 저를 불렀거든요. 언어가 안 되니까... 통역으로 가니까 알게 되고... 옛날에 성폭력은 다른 사람한테 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이주여성 A)

몇 달 전에 일하는 사람 내려주고 가는데 뒤에서 술 먹은 사람 둘이 건드리고 갔어요. 막 그 사람하고 싸우고 경찰 부르고 그랬는데 그걸 크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좋게 좋게 지나가지 왜 이러나. 제 입장에서 볼 때 저 혼자인거 알고 외국 사람인거 분명히 알고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경찰서에서 와서 좋게 끝내라고 해서 저는 사과를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 사과를 못 받았어요. (여성이주노동자 C)

2017. 6월경쯤인데요. 00면에서 태국 여성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주인이 2천만 원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끝났어요. 2018년 6월경에는 00동에 거주하는 한국 체류기간이 18년 정도로 한국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한 외국인인 카자흐스탄 노동자가 입국한 지 얼마 안 되는 자국 여성에게 한국생활을 편하게 하려면 자기와 친해져야한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건이 있었어요. (현장 경찰관 E)

올해 6월 경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이주노동자 2명이 고용인 농장주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고 외근 업무를 하면서 첩보를 입수하여, 현재 여청수사팀에서 내사 중에 있는데, 첩보를 입수한 후 즉시 통역원을 대동하고 피해자 사실 확인 후, 이주 센터에 인계하여 격리조치 상태에서 수사 진행한 건이 있습니다. (현장 경찰관 F)

들은 얘기인데요. 중간에서 일 소개시켜주는 사람들을……. 농촌하고 중간에서 소개시켜주는 사람들 많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농장주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한국 사람하고 그 나라 사람들 하고 같이 여자 소개 시켜준다고, 일 시켜 준다고 한대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같이 뭐하면 일 시켜 준다, 같이 술 마시면 일 시켜 준다고도 하고 그래요. (여성이주노동자 C)

최근 이주여성인권단체에서 여성이주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실태를 언론에 보도하자 각 관련 기관에서는 개선 대책들을 내놓게 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주여성이나 관련 전문가들의 면접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연령이 많은 농촌의 농장주들은 인식의 변화가 크지 않아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남성들은 반말을 하거나 성적언어와 성적 접촉을 스스럼없이 하고, 정작 본인들은 성폭력이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아직도 농장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장주를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엔 심한 성폭력은 감소한 것 같아요. 상담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면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약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요. (전문가 A)

요즘은 큰 게(사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요즘은 나오는 거가 있다면, 바로 이렇게 하거든요(인터넷에 올린다는 뜻). 제가 보기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실 ‘제도’ 몰라요, 신고 제도나, 언어도 안 되고 저를 보호 제도 잘 몰라요. 사실 시스템은……. 1577-1366 그런 게 긴급 전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전화하면 베트남어 되니까 할 수 있으니까. 통역……. 그리고 사실 합법은 안 당해요. 사장님들은 사실 조심스럽지(합법이면)……. 누가 불법 되면 그러면 자꾸 사장님도 “너 보호해 주는 사람 없으니까 신고도 못 할 거야” 하고 함부로 할 수 있죠. (이주여성 A)

주로 농촌의 고용주의 연령대가 50대 후반, 60대, 70대가 많으므로 성희롱 교육을 받지만 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남성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반말, 성적 언어구사와 성적 접촉을 스스럼없이 하고, 정작 본인들은 성폭력이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

고요. 최근 상담사례의 경우 숙소의 문을 노크 없이 열고, 개인의 사적 영역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하며 이야기할 때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만지는 등 불쾌하지만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전문가 D)

나.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

선행연구 분석 자료에서 성폭력 가해자는 한국인이 80%이며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한국인 고용주, 관리자가 6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실제 심층 면접 조사 결과에서도 농장주에 의한 피해 사례가 많아 농장주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 된다.

최근 이주노동자들은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나 SNS에서 활발히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자국민 또는 타국 동료에 의해 서로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도 피해가 발생한다는 면담 결과를 보면 농장주 외에 다양한 대상이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대처해야 할 것이다.

사장님이...성폭력 당했어요. 요즘은 아니고.....오래전 일이에요. 친구가 사장님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들었어요. 사장님이 신고하지 말라고 달래고...... 합의를 봐줘서... 나중에 다른 데서 일하게 해주고. 그래서 신고를 안했다고 들었어요. (여성이주노동자 E)

충남 00에서 캄보디아 여성 두 분이 여기까지 와서 상담을 한 적 있는데 사장이 얼굴을 쓰다듬고 허리를 껴안았다고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사장은 부인을 하고 증거도 없다 보니 사업장 이동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죠. 또 한 번은 경기 00에서 태국 여성이 옆에 있는 농장 남자노동자들이 계속 찾아오고 방문을 열기도해서 무섭다고 상담을 했는데 직접 농장을 방문하여 경고 조치하고 끝난 적이 있어요. (전문가 A)

요즘은 이주노동자들도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나 SNS에서 활발히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엔 한국 사람들만 범죄자로 생각할 게 아니라 같은 나라 사람이거나 다른 나라 외국인들과 사귀는 경우도 많대요. 사귀다 헤어지고 쉽게 사귀고 하다 보면..... (범죄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제는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 C)

제가 통역했어요. 농장 갔었어요. 사장(농장주)들이 밤늦게까지 일시키고...... 가보니까 집이 엄청 안 좋아요. 애들 엉덩이 만지고...... 월급이 잘 안 받고. 또 적게 받고. 짐세는 너무 많이 빼고. 새로 온 사람은 괜찮아요...... 잘 아무것도 모르고 짐세도 많이 빼도..., 또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통역...제가 경찰서 조사 할 때 통역해 줬었어요. (이주여성 F)

다. 여성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

여성이주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등 인권침해 실태가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드러나면서 각 기관에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심층면담 결과에서 심각한 성범죄 피해는 감소한다고 응답하지만 합법 체류자보다 불법 체류자의 경우 인권침해는 더 클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초청을 받은 부모나 고용허가제로 입국했다 이탈한 이주노동자가 농촌에 불법 취업한 경우 신고를 하면 일을 못하게 될까봐 웬만한 피해는 그냥 참고 지내게 된다. 농촌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근로환경 등 인권문제는 제조업보다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주여성 전문가의 면담 결과를 보면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성폭력 피해 외에도 경제적 목적과 한국 생활에 어두운 약점을 이용한 브로커들에 의해 성매매 위험에 빠지거나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경찰에서는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농장주와 이주노동자간의 문화적 차이, 노동시간 문제, 임금문제, 농장주의 욕설과 무시하는 태도 등은 서로 언어적 소통이 되면 대화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 언어소통이 되지 않아 갈등은 반복되고 심각하게 확대되기도 한다. 멀리 있는 고용센터에 개선을 요구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반복되다 보면 못 견디고 농장을 이탈하여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관련 기관에서는 이주노동자 인권문제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이들을 중재하는 노력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처음에 올 때 E-9 비자로 들어왔어요. 처음엔 누가 도와주고도 없고, 그리고.. 사실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당하거든요. 합법체류자, 근로자들은 잘 안 당해요. 합법체류자들은 신고할 수 있어요. 저지분한 하우스 생활을 하고....., 사실 농업은 그..베트남 부모님들은 여기 오시면... 많이..부모님들은 많이 취업해요. 농업인 이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나이 많이 먹고 그런(성폭력) 대상 안 되지만... 만약 내 딸 있으면 이런 곳 안 보낼 테다.” 근데.. 말을 구체적으로 안 해요. 혹시 자기가 곤란할까봐 경찰이나 혹시 어디서 발견하고 자기 일 못하게 할까봐. (이주여성 A)

사실 착한 사장도 있고 못된 사장도 있어요. 잘 지내는 사람들은 잘 지내요.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애들을 괴롭히고 물건을 던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장님과 노동자들이 안 맞아요. 큰 게 아니라 경찰서에 이야기 안하고... 고용센터에 이야기 하는데 안 되잖아요. 가봐야 해 줄

수 없어요. 그냥 참으라고 해요. 그냥 있어요. 고용센터에 얘기하고...안 도와주면 도망가서 불법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장이 힘들게 하나까...(이주여성 F)

고용허가제(E-9), 관광비자,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족으로 입국해서 일하고 있고, 취업비자를 가진 자들이 기간을 넘겨 미등록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은 신분의 불안으로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추방될까 두려워 얘기하지도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D)

4.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피해 대응 실태

앞의 제3장 농촌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실태 분석에서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언어소통 및 정보부족 등의 이유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분석결과를 보더라도 성폭력 피해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이주노동자는 한국 내에서 언어소통 및 정보부족으로 인해서 성폭력 피해 신고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체류자는 합법체류자보다 더 열악한 실정에 있다. 외국인이라는 신분과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문제가 발생하면 본국으로 송환된다는 생각에 범죄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못하고 참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는 수치심 때문에 내놓고 신고하기 어렵고 문제 발생 시에는 비자연장의 불안감으로 더욱 신고를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사경찰이 여성이주노동자 대표 또는 관련 기관 전문가들과 신뢰를 쌓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범죄피해 대처요령, 신고방법,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등 다양한 치안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면 여성이주노동자의 범죄피해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가. 언어 소통부족으로 인한 대응의 어려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의 이주노동자는 일정시간 한국어 교육과 시험을 보고 입국하고 있지만 입국초기에는 언어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입국하는 국가도 다양화되어 현재 16개국에서 노동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이들은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피해를 당해도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해 신고를 못하는 것이다.

특히, 단기취업(C-4)비자로 입국하는 계절노동자의 경우 고용허가제에 비해

언어 요구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한국어가 더 부족해 피해 발생 시 대처가 더욱 어렵다. 여러 번 입국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한국어 수준이 조금씩 나아지고 농장주와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피해 발생이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입국 초기인 이주노동자나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통역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농촌지역 통역문제의 심각성은 현장의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16개국이라는 다양한 나라에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넓은 농촌 지역에 흩어져 일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통역이 더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의 현장 경찰관 언어능력 향상, 통역요원 확대 및 통역비 현실화 등 다양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상담 시 가장 문제가 언어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센터에서는 결혼이주로 일찍 들어와서 정착한 외국인 통역 직원과 결혼이주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보고 통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한테 자원봉사자들은 전문용어에 대한 통역 등이 부족할 수 있어요.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죠. **(전문가 G)**

외국인과 이주노동자를 많이 만나야 사건을 미리 파악하여 예방도 하고 사건처리도 하죠. 그런데 외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언어가 문제예요. 관내에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많은데 언어를 하는 사람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외국어를 할 수 있는 현장 경찰이 많아져야 해요. 통역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통역비는 현재 사건을 하는 경우만 지급되는데 일반적인 상담 등도 외국인들의 일을 처리할 때 통역비를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장 경찰관 B)**

시험을 보고 들어오지만 책으로 공부하다 보니 1년 이상 오래 지나야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사장이 힘들게 하면 통역을 해서 사장한테 말해주면 사장이 덜 할 텐데……, 통역이 없어요. 00고용센터까지 가야하는데 통역이 사장 편만 들어 준다고 해요. 이주노동자보고 “참아라.” 한다고……. 제가 통역을 몇 번 해주다 보니까 사장들이 이제 알고 “네가 왜 전화해” 전화를 끊어 버려요. 애들 편만 들어준다고.. 안 좋아해요. **(이주여성 F)**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00시에서 등록된 민간인 통역원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영어)을 제외한 국가일 경우, 통역원 섭외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즉시 피해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요. 또 피해자를 격리 조치하려면 쉽터가 편도 40분이나 소요되는 00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요. **(현장 경찰관 F)**

다양한 국가에서 이주노동자가 유입되면서 언어소통을 위해 통역요원의 확대 필요성은 앞서서도 기술했다. 경찰 내 제3국어 즉, 희귀언어 통역요원 확대의 절실함은 면담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은 통역요원이 더 부족한 실정으로 이주여성 중에서 한국어자격증이 있거나 언어가 우수한 이주여성을 통역봉사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국민 이주여성봉사단이

통역을 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어려운 수사 용어를 잘못 통역하면 가해자,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법전문용어 등 정기적인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은 경찰 수사의 신뢰성에도 매우 중요하다.

처음엔 한국말을 못하다가 1년, 2년 왔다갔다 하다보면 한국말 배우기도 하고 그래요. 대충 말을 알아듣기는 하는데 쓰는 거, 뭐하는 거 아무것도 몰라요. (여성이주노동자 C)

경찰 수사와 관련 통역인이 필요하고 통역의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통역인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피해를 정확하게 통역할 필요가 있고요. 국선변호사 선정이나 피해자들에게 컴퓨터 제공 등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D)

채류 외국인인 많은 데는 오히려 걱정이 없어요. 통역도 있고, 그런데 외국인인 10여명 있고, 미안마어 등 화귀어가 시골 같은데.. 그런 게 많아요. 미안마.. 이들이 사고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시리아, 아랍어 등 사고를 빨리 처리를 해야 하는데 통역요원이 별로 없어요. 태국 사람들은 결혼이주여성들도 별로 없고..... 일만 하고 언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통역할 사람도 없는 거죠. (현장 경찰관 E)

다음은 통역비 문제로 현재 경찰에서 수사통역비는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 이전 단계인 피해자 상담단계에서도 통역이 필요하지만 수사까지 이뤄지지 않고 종결되는 경우 통역비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심층면담 결과에서 ‘교통비’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한다. 농촌지역 특성상 넓은 지역을 차량 없이 이동이 어렵고 주말이나 야간에 상담이 이뤄질 때가 종종 있어 실비라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향후에도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통역 요구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정 마련과 예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외국 사람은 말을 잘 못하니까 통역이 꼭 필요해요. 저는 12년이나 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돈을 받고 있으니까 경찰서에 통역을 해줘요. 저는 통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직장 없는 사람은 자원봉사가 힘들어요. 경찰관들은 수사할 때 통역은 돈 주거든요. 봉사는..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은 안줘요. 1~2명씩 (통역요원) 뽑아서 통역을 시키거든요. “시간 있어요? 주말에, 봉사 좀 해주세요.” 의무적으로 교통비 주면 누가 안하겠어요. 경찰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많으나 오래된 사람은 안가요. 자원봉사도 하지만 농촌은 멀어서 기름 값도 들고요. 주말에, 야간에 피곤하고 돈도 안 주는데 누가 가요. 저는 월급을 받고 일하니까 자원봉사 많이 하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이주여성 A)

보통 상담할 때는 같은 나라 사람을 대동하고 상담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외국어는 결혼이주여성 자원봉사자나 00콜센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통역 인력풀이 경찰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워낙 다양한 국가 사람들이 있어 통역이 가장 큰 문제예요. 통역을 해야 하

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주여성 통번역을 하는 직원들이 계시지만 나라가 워낙 많으니까……. 통역비도 현실적으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 보면 통역 문제가 그게 무엇보다 가장 문제예요. 동남아시아 다양한 국가들이 많고 들어 온지 오래 안 된 사람은 간단한 말 외에는 말을 잘 못하니까요. (전문가 G)

나. 정보 부족으로 인한 대응의 어려움

이주노동자 지원 전문가는 면접조사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신고를 못하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정보 부족으로 신고기관을 잘 모른다고 한다. 충남지역 노동자가 경기도에 와서 신고하는 사례도 있고 자국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한국경찰에 대한 신뢰가 없어 신고를 못하거나 취업에 지장이 우려되어 신고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는 농촌 깊숙이 농장에서 숨어 지내며 정보가 더 부족하고 신분의 불안정으로 신고를 못하기도 한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해 경찰의 접근이 더 어려우므로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지 않도록 경찰에서는 자국민 대표 또는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치안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의 대처능력 부족이 문제인데요. 사건이 발생한 후 도움을 청할 장소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이주여성노동자가 피해를 입고 충남 00에서 경기도 00로 신고한 사례도 있는데 이주여성들이 어디에 신고할지 몰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주여성들도 일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동하고 끝나길 원하죠. 동남아지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경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요. 자국 경찰에 대한 인식 때문에 한국 경찰에 대해서도 신뢰가 없고 신고를 해도 처리가 안 될 것이라고 미리 생각하고 신고하기를 꺼리는 것 같아요. 또 신고하면 번거롭기도 하고 돈 버는데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전문가 A)

첫째는 신분의 불안정(미등록이주민)으로 불안에 떨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수 치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아무도 믿어주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과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불안해 신고를 못합니다. 셋째,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요. 넷째는 어디에 요청할지 몰라서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D)

다. 2차 피해로 인한 대응의 어려움

여성이주노동자들은 범죄신고, 특히, 성폭력 피해 신고를 했을 때 같은 나라 통역 봉사자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소문이 나가거나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기도 한다. 경

찰에서는 수사 시 피해자의 신분 노출 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여성이주노동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홍보하고 주지시켜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농장주든 외국인이든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때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여성이주노동자는 마음 놓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주여성들이 경찰서에 신고하고 싶어도 자신이 노출될까봐 신고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럴 거예요. 개인정보가 보호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신고를 하면 소문이 날까봐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문가 B)

범죄 신고를 했을 때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잘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이주여성들은 한국에 있는 같은 나라 사람들이 아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전문가 C)

신고를 못해요. 창피하기도, 부끄럽기도 하고, 일을 크게 안 만들려고 하니까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몸이 하나잖아요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또 볼 거라는 것,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 받고 힘드니까 말 안하는 거고.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피해를 봤어요. 외국 사람이...그 사람이 직접 한국 사람한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모니봉사단', 봉사단을 거쳐서 하면 조금 그 사람이 마음이 덜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여성 이주노동자 C)

범죄 신고가 들어왔을 때 외국인 피해 범죄는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고 농장주와 외국인 노동자가 서로 합의를 보거나 사업장 변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이든 농장주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해요. 그래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외국인 여성노동자가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 경찰관 D)

제가 몇 번 통역을 해줬는데, 애들이(여성이주노동자) 경찰한테 신고하려면 "가봐라. 가봐야 경찰들이 내 친구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포기하고...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여기 00에 외국인들 많으니까. 전부다 여자들 ..., 그러니까 줌... 무슨 일 있으면 애들이 찾아와서 상담도 할 수 있고 우리 도와주면 좋은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주여성 F)

이주여성들은 신고하고 싶어도 사람이 별로 없고 증거가 없으니까, 믿어주지 않을 거로 생각하죠. 말이 통하지도 않고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되고, 돈 벌어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신고를 안 하거나 못하고 사업장을 이동해 주는 걸 원하더라구요. 성희롱 같은 경우 두 사람 외에 증거가 없으니까 믿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현장 경찰관 B)

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여러 가지 확인을 하거나 정보를 얻기 위해 센터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이 오는 것을 싫어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기네 나라 사람들에게 정보가 노출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 꺼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경찰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 C)

라. 불안한 신분으로 인한 대처의 어려움

여성이주노동자가 성폭력 피해 시 경찰에 신고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한 신분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입국초기 위협을 받거나 무서워서 그냥 참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복잡해지는 게 싫거나 비자를 연장에 지장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기도 한다. 특히, 체류자격이 만료되어 합법적 비자가 없는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출국 당할 것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것이다.

경찰은 이주노동자들이 경찰을 신뢰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고 외사경찰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불법체류자도 중요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법체류자의 인권도 보호한다.

이주여성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 요청을 못하는 이유는 위협을 받거나 무서워서 도움 요청을 할 수 없어요. 한국말을 못해서 신고를 못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복잡해지는 게 싫어서예요. 노동자들은 나중에 비자 연장하는데 복잡해질까 봐 신고를 하지 못해요. (여성이주노동자 B)

많은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체류자격이 만료되어 합법적 비자가 없는 상태로 국내 체류 중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당장 출국 당할까봐, 혹은 한국어 능력이 없고 국내 법률 절차 미숙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신고를 꺼려하며, 경찰 등 기관보다는 같이 일하는 사람 혹은 업주의 이야기를 신뢰하고 있어요. (현장 경찰관 A)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되었어요. 도움 요청을 하고 싶지만 한국말도 모르고 무섭기도 하고……. 그냥 참아야만 해요. 서로 말 못 알아듣고 지역 통역사가 경찰서에 연락 잘 되고. 통역해주면 더 쉽게 도움을…….(요청할 수 있다), 우리에게 좋습니다. (여성이주노동자 D)

농촌지역 여성 근로자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신분상의 약점인 것 같아요. 이주여성근로자들이 불법체류 상태에서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에는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범죄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못하죠. 신고하면 추방당할까봐 신고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주여성 근로자들은 합법이든 불법 체류 등 대부분이 보통 자국 내에서 많은 대출을 받아 집을 짓거나, 가족 생활비로 매월 송금하거나, 입국 브로커에게 지출한 대출금 같은 것을 상환하는 등 매월 송금해야 하는 돈이 있어요. (현장 경찰관 E)

5. 농촌지역 이주노동자 범죄예방교육

우리나라 여성이주노동자의 비중은 제조업분야보다 농업분야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농촌지역에 여성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체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국제결혼을 통해 농촌으로 이주해 온 여성결혼이민자가 많았으나 최근엔 그들의 초청 가족, 고용노동자, 계절노동자 등 다양한 경로로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과수원의 과일수확, 비닐하우스 채소재배, 딸기, 깻잎농사 등에서는 여성의 손길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입국하거나 또는 과종기나 수확기 등 일손이 부족할 때 한시적으로 노동력을 공급하는 계절근로제를 통해서 여성이주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여 농촌의 깊숙한 농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농촌의 여성이주노동자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농촌의 열악한 주거·노동환경으로 인해 성폭력에 피해에 더 노출되어 있으므로 범죄피해 예방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한국에 입국하여 농촌의 넓은 지역에 흩어져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설사 교육을 한다고 해도 언어가 지원되지 않는 한 형식적인 교육일 수밖에 없다. 이에 경찰에서는 농촌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범죄피해 예방교육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가. 농촌 이주노동자 범죄예방교육 실태

이주노동자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사경찰이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범죄예방교육은 중소도시 이상에서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유학생,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체 등 체류 외국인들이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 교육이 필요한 농업분야의 이주노동자들은 평일에 집합교육을 할 수 없는 현실이고 농촌지역 특성상 넓은 지역을 찾다니며 교육하기에는 경찰 인력 증원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나마 농촌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의 ‘한국어교육’은 주로 주말에 이뤄지고 있어 외사경찰관 한, 두 명이 근무하는 농촌 경찰서에서 이주노동자 교육을 위해 주말까지 업무를 요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농업은 아직 의무규정이 없다. 농장에도 성희롱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농장주와 이주노동자가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은 후 이를 다음 고용허가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

계절노동자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의 초청이나 지자체의 초청을 받아 지인들끼리 단체로 입국하는 경우는 문제가 적을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지원하여 입국할 때는 전문화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이주노동자만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농장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농장주가 성희롱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 처음에 모르고 시작한 행동이 성폭력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므로 농장주를 대상으로 성희롱 개념이나 성인지적 관점의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근로자(제조업)들이 성희롱 의무교육이 있어요. 1년에 한번... 회사에 들어가서 근로자를 쓰는(고용) 사람은 의무교육을 시키는데 안 지키면 다음 해에 근로자를 사용 못하게 하면 돼요. 농촌도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1년에 한번 한집, 두집, 세집 모아서 교육시켜야 해요. 노동자들 교육시키면 나중에 고용할 수 있다. 안하면 나중에 고용을 불가능하다고 하면 다 신청하거든요. (이주여성 A)

범죄예방교실 많이 해요. 사실 저는 참가 해봤는데 형식적 이예요. 외국인 10명 이상, 5명이 있는 농장도 많아요. 큰 경찰서 보다는 작은(지역)경찰이 파악해서 관리하고 전달해야 해요.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그런 거... 방문해서 많이 방문하는 건 아니지만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파악해서... 지역 경찰이 잘 몰라요. 문제가 생기기전에 미리 파악해야죠. (이주여성 A)

농장주들이 개념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희롱에 대한 개념이나 인지적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농장 주인이 이주여성 혼자 있는 방에 처음에는 부담 없이 무심히 한

번 들어갔는데 그 다음 또 들어가고 자주 들락거리다 보면 추행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점점 강도가 세지면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A)

자치단체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경찰은 범죄에 대한 교육을 하지만 매년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범죄예방교육을 하는데 근로자들은 퇴근할 때, 우리는 퇴근하고...외사요원은 2명인데 지역별로 요일을 잡아 다녀야 하는데... 16개면에 리만해도 수백 개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현장 경찰관 E)

외사요원 1명이 농촌이라 매우 넓고 2,500명에 달하는 체류 외국인을 혼자서 관리하고 있고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농촌지역 특성상 한 지역에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것이 아니라, 800km² 면적에 넓게 분포되어 있어요, 일일이 방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마트 3개소에 경찰 전단지를 비치하여 안내하고, 농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연합회장과 연락하여 사건을 파악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현장 경찰관 F)

나. 입국초기 정례화한 맞춤형 범죄예방교육

농촌 경찰의 인력 증원이 어려운 현실에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입국초기 취업교육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여성이주노동자는 입국초기에 한국문화를 잘 모르고 한국어 소통이 되지 않아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모국어로 된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한다면 현장교육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

고용허가제(E-9)로 한국에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입국 15일 이내에 취업교육을 받는다.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취업교육은 대행기관인 농협에서 담당하며 2박 3일 동안 교육을 한다. 경찰청에서는 고용노동부 또는 대행기관인 농협중앙회와 교육지원협약(MOU)을 통해 취업교육 프로그램에 경찰의 범죄예방교육을 정례화 하는 방안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계절노동자는 지자체에서 대부분 그날 교육 후 농장에 배치하고 있어 고용허가제와 같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개선된 프로그램에 관할 경찰서에서 범죄예방교육을 정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입국초기 교육을 확대하면서 인적 교류를 하고 이주노동자 끼리 인맥을 형성하면서 신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용노동부의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시간이 짧아 형식적일 수 있는데 입국초기 교육을 전문화하여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과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누구나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신고 체계를 구축하여 신고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직접

다니며 교육하는 것보다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 G)

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를 받기 전에 교육을 받게 하고 처음부터 의식교육도 시켜야 해요. 잘 몰라요 어떤 게 뭔지.. 잘 몰라요. 처음에는 성추행을 약하게 하다가 그냥 있으니까 계속 되고.. 그러다 점점 세어지고.. 나중에 말도 못하는 거죠. (여성이주노동자 C)

다. 농촌 맞춤형 민·관 협력 치안활동

농촌지역 여성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과 더불어 효과적인 범죄예방 치안활동으로 농촌 영농조합의 이주여성 관리자 또는 농촌지역의 새마을부녀회 대표를 활용하거나 국가별 외국인 커뮤니티를 파악하여 국가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 외사경찰이 교체되지 않고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여성이주노동자와 유대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농촌 이주노동자를 위해 마을방송을 활용하거나 마을의 대표를 통해 범죄예방교육 자료를 전달하는 방법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관 맞춤형 치안활동으로 개선한다.

보통 한 마을에 외국인 노동자가 다섯, 여섯 명씩 있어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걸 몇 개월마다 시골 마을에 통보해주면 좋겠어요.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마을에서 전달하거나 방송하는 게 좋겠어요. 한국 사람은 조금 불편하겠죠. 그런데 가끔 한 번씩 방송해주면 서로서도 조심하고 피해도 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성이주노동자 B)

오랫동안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건... 외국 나라마다 특성이 있더라고요. 참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국가마다 특성에 맞게 맞춤형 범죄예방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 근로자들은 대사관에서 SNS 홍보활동을 잘하고 있어 범죄피해 발생 시 활동성이 있는 이주여성을 통한 SNS 홍보가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은 주거지 한 곳에서 삼삼오오 모여 생활비를 분담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농장 등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범죄예방홍보를 하는 것이 좋고요. 필리핀인들은 농구, 배구 등 체육활동을 많이 해서 체육행사 일정을 미리 파악하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마스지드(masjid)에서 금, 토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는데 주말에 이슬람 사원, 마스지드에 방문하여 범죄예방활동이 필요합니다. 국가별 특성을 파악하여 예방활동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유대관계가 필요해서 외사경찰이 자주 바뀌면 관계가 없어서 파악이 안돼요. 오래 근무해야 그나마 서로 잘 알게 되고 일(범죄예방활동)을 할 수 있어요. (현장 경찰관 E)

농촌지역은 영농조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주노동자가 많은 지역엔 이주여성 노동자들을 일을 배정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형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활용하여 이주노동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농촌지역에 많은 외국인들의 커뮤니티가 있고요. 매년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요. 새마을지도자들의 모임이 결성되어 있어서 행사를 기획할 때 누가 오는지 미리 파악도 될 거예요. 이럴 때 파악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 C)

한국에 이미 정착한 이주여성들의 봉사단체인 ‘마미폴’, ‘하모니봉사단’ 등 많은 이주여성들이 자국민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경찰서에서 10여년 자원봉사활동을 한 면접 대상자는 입국 초기의 베트남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경찰서에서의 자원봉사 경험을 살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자국민의 범죄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주여성치안봉사단’을 경찰 치안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민·관 협력치안활동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촌지역에는 동일 국가 사람끼리 자주 모이는 장소인 ‘외국인마트’가 있고, 범죄피해 등 문제가 생기면 마트 업주인 이주여성에게 상담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경찰청에서는 도움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중요한 상점들을 찾아 도움센터로 지정하고, 외사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한 후 이주노동자 범죄피해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실은....“마미폴”, 경찰폴 활동을 많이 해요. 경찰서에서 만들어 거의 10년 됐어요. 제가 처음부터가 자원봉사 활동하고요. 그러니까 많이 접근해요. 이주여성이나 결혼이주여성이나 근로자들이 많이 접근... 많이 홍보하니까 치안이 좀...제가 보는 편은 좋은 편이에요. (이주여성 A)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자가 아시안 마트를 운영하는데 이곳이 캄보디아인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이며, 범죄피해 등 문제가 생기면 아시안 마트 사장에게 상담을 받고 있어요. 아시안 마트 사장과 외사요원 간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는데 성폭력 피해보다는 지난 2년간 작업장 변경이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현장 경찰관 F)

라. 타 기관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치안활동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농장주의 성희롱 및 인식개선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농장주 교육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취업교육’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농장주 외국인관리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교육은 이주노동자 취업교육 마지막 날 농장주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범죄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농장주 외국인 관리 교육은 고용허가제도와 노무관리 방법, 문화적 차이 이해 등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필요한 교육을 함으로써 사업장 내 원활한 고용관계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으로 이수하면 다음 고용노동자 신청 시 가점을 받고 있는데 이 교육을 활용하는 방

안을 제시한다.

농촌지역 각 지자체마다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기획사업으로 타 단체 지원 프로그램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민방위교육, 영농교육 등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농장주를 대상으로 이주노동자를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기관과의 유대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출입국, 고용노동부 같은데서 취업교육 시 농장의 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활용하여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도 좋을 것 같아요. 지자체마다 특성이 있는 맞춤형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경찰에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평소에 기관 간에 유대가 있고 정보가 공유 되어야겠죠. (전문가 C)

다른 기관 교육 프로그램으로 민방위 교육이나 영농교육 등 생활과 밀접한 교육들을 활용하여 농장주를 대상으로 외국인에 대한 의식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 A)

비자 1년 연장할 때 교육을 받게 하면 좋아요. 한국어교육, 성교육, 범죄예방교육 등을 1년 근무 중에서 언제까지 몇 시간 받아야...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연장해 주는 거예요. 1년 안에 교육 1시간, 교육 2시간 그러면 언제라도 만들어 교육을 받아요. 교육 받지 않으면 비자 연장 해주지 않으면...어떤 방법이라도 교육 받아요. 반드시 받죠. (이주여성 A)

여성이주노동자들의 범죄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장주들의 입장에서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법무부, 고용노동부 간담회에서는 같은 국가 이주노동자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태업을 해 오히려 농장주가 피해자가 되는 사례도 있다며 농촌의 애로사항을 토로하기도 한다.

그러나 농촌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어 이주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관계 극복이 어려운 현실이다. 농장주들의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인권침해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공존하는 농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농장주들의 정기 간담회가 있어요. 노동부, 출입국사무소, 법무부와 함께 간담회를 하는데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장주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자기 국가 사람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 태업을 해서 농장주들이 애를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성폭력 범죄 등 예방 교육을 받은 농장주들이 자신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다고 불만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전문가 A)

범죄예방교육은 이주여성들 보다는 농장주나, 관리자들에게 성희롱의 개념이나 성인지적 관점에서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에서 반기, 분기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용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여성노동자를 채용하면 정기적인 의무교육 규정을 만들어 사용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단순히 처벌규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인지 교육적 관점에서 의식개혁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장 경찰관 B)

6. 농촌지역 이주노동자 정보제공 방안

농촌지역 특성상 여성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데다 농촌 관할 경찰서 외사업무 담당 경찰은 보통 한, 두 명으로 흩어져 있는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정보부족으로 인한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촌에 맞는 다양한 정보제공 방안을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한국에 입국한지 오래되거나 여러 번 입국했던 이주노동자들은 어느 정도 언어도 되고 나름대로 정보를 공유하며 노동자들끼리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입국초기인 이주노동자들은 언어와 정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앞의 성폭력 피해 실태분석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여성이주노동자들에게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치안정보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죄피해 예방 리플릿 등은 16개 국어로 제작하여 고용노동자 취업교육과 계절노동자 배치하기 전 교육 중에 배포하거나 휴대전화의 페이스북, 자국민 커뮤니티 등 SNS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주여성봉사단’, ‘외국인도움센터’ 등 구축되어 있는 경찰의 핫라인을 통하여 치안정보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외국인축제, 자조모임, 새마을부녀회 등 지역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가. 다국어 리플릿 등 제작·배포

농촌지역 여성이주노동자들에게 효과적인 치안정보제공 방법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국어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성희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16개 국어로 제작하여 이주노동자 취업교육

시 홍보자료로 배포하는 것 외에도 지역 경찰이 순찰 중 배포하거나 도움센터 또는 관련기관에 비치하여 제공한다. 경찰청에서는 이미 다국어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나 농촌지역까지는 보급되지 않고 있어 정작 필요한 곳에는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국어 리플릿 외에도 신고 전화번호가 있는 부착용 소형스티커를 제작하여 여성이주노동자가 많은 농촌마을 집집마다 스티커를 부착해 주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국가 언어로 성희롱,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리플릿 등으로 만들어 나눠주거나 지금도 만들어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로 본적이 없어요. 홍보물을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홍보를 하거나 다문화센터 등에 비치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신고전화번호나 신고방법 같은 것을 여러 나라 언어로 만들어 농촌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 나라 언어로 된 스티커를 농촌 이주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농장이나 마을 같은데 붙여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전문가 G)

외국인 대상 외국어로 된 안내문이 필요합니다. 즉, 성폭력, 성희롱에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안내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역 여성이주노동자 공동체를 방문하여 홍보물을 전달하여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문가 D)

농촌지역의 이주여성들은 대부분 외진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일일이 찾아다니기 쉽지 않아요. 지역경찰이 다니면서 나눠주든지, 관련 기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여러 나라 언어로 된 홍보전단지 등을 만들어 성폭력이 어떤 건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해당 국가어로 만들어 많이 전달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경찰관 B)

나.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정보 제공

농촌지역에서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과 힘든 노동으로 경찰서나 이주노동자지원센터 등 지원 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나마 이용을 해도 주로 주말에 이용하기에 경찰관이 직접 상담하고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농촌 현실에 맞는 치안정보 제공활동으로 SNS나 자국민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성이주노동자들은 페이스북, 자국민 커뮤니티, 카카오톡 등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SNS를 통해 대부분 소통을 하고 있다. 한국에 선(先) 입국한 이주여성이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자국민 여성이주노동자에게 SNS를 활용하여 다양한 범죄예방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보제공

방법이 될 것이다.

여성이주노동자가 범죄피해를 당하고 언어 소통이 안 되어 신고를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신고’ 앱을 다국어로 업그레이드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들을 마을에 모아서 전달해 주면 좋겠는데, 직접 전달하기는 어렵고.... 베트남 사람끼리 커뮤니티가 있고 SNS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방법도 좋아요. 오래 있던 사람들이 처음 온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새로 온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오래 살아온 이주여성들한테 홍보를 하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으로 전달하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저는 한국에 오래 있었잖아요? 새로 사람 오면 만나잖아요. 처음 온 사람한테 말하고 전달해주면 돼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폭력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려주는 거죠. (여성이주노동자 B)

이주노동자들이 농촌에서 일을 하다보면 시간 내거나 모여서 교육 할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SNS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서... 나라마다 커뮤니티가 있는데 범죄예방활동 등을 그때그때 나라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현장 경찰관 A)

다. 외국인 치안봉사단과 도움센터를 통한 정보제공

한국에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오래 전 한국에 입국해 정착하여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자국민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이미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주여성치안봉사단’을 운영하는 경찰서도 있다.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등 한국어가 익숙한 이주여성들이 ‘마미폴’, ‘하모니봉사단’ 등 다양한 명칭으로 자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과 범죄예방 합동 캠페인 등 범죄예방활동과 자국민 이주노동자들의 피해 상담을 받아 평소 네트워크 되어 있는 외사경찰에게 전달하여 도와주기도 한다.

‘이주여성치안봉사단’은 사법통역 이전의 통역봉사와 이주여성의 상담자 역할까지 경찰과 이주노동자 간에 중요한 가교(架橋)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시키고 치안자료를 제공하여 자국민을 돕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하모니봉사단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불법이든 불법 아니든 그런... 오래된 사람한테 정보를 많이 받으려고 하고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육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체류자가 이런 저런 걸 당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이런 걸 하모니봉사단 그런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알려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몇 달 안 있는 사람들(단기체류자)한테 안 물어보잖아요. 어쨌든 00지역에 있는 몽골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한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중국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한테 가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뭐 그 사람에게 받을 수 있고.....(여성이주노동자 C)

경찰청에서는 각 지역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NGO단체, 외국인 마트 등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을 외국인 도움센터(Assistance Center for Foreigners)로 지정하여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각 지방청에 지정된 외국인 도움센터는 <표 25> 와 같이 342개소가 있다.

<표 25> 지방청별 외국인 도움센터(Assistance Center for Foreigners) 현황

(단위 : 개소)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42	59	20	18	16	8	9	10	41	15	6	13	18	17	24	31	32	5

자료: 경찰청, 2018. 경찰백서

2018 경찰백서에 의하면 2017년 ‘외국인 도움센터’를 통해 총 32,680건의 범죄피해 신고와 민원을 상담·처리 하였다. 외국인 도움센터로는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외국인 밀집지역의 외국 식료품 판매소인 ‘외국인 마트’⁶⁰⁾ 등이 지정되어 있다. 외국인 마트는 대부분 농촌에 다수 거주하는 국가의 이주 여성이 운영하기도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궁금한 것을 상담해주고 도움을 주는 곳으로 ‘외국인 도움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곳을 찾아 확대 지정하여 전단지를 비치하거나 치안정보를 제공한다.

여기는 이주노동자 행사도 별로 없어요. 멀리 나가야 1년에 2~3번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별로 없고...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나가도 말이 안 통해서... 애들이 여기(마트)를 많이 와요. 마트에 갔다 놓으면 제가 나뉘 줄 수도 있고 상담할 때 줄 수도 있어요. 사장이 때리거나 할 때 연락이... 저는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이주여성 F)

60) 경찰청에서는 외국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외국인도움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도움센터로 지정된 곳도 있고 지정되지 않은 곳도 있다.

라. 지역 프로그램을 활용한 정보 제공

입국초기 취업교육 현장에 경찰이 직접 진출하여 교육을 한다면 합법적인 노동자는 경찰의 교육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이전에 입국하여 경찰의 교육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와 불법체류자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 다양하게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 지역마다 특색 있게 운영하고 있는 기관 프로그램이나 몽골축제, 캄보디아 쫄쫄남축제, 이주노동자 체육대회 등 각 나라별 프로그램을 미리 파악하여 현실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촌 특성에 맞게 새마을부녀회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체류 외국인 몽골축제를 보면 그렇게 많아도 유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국적별로 다 달라요. 축제 때 모이는 캄보디아 '쫄쫄남축제'라고..... 모이는 때가 있어요. 근데 축제라고 하더라도 그 국가적인 축제 같은 설날, 명절날 모이는 축제가 있고, 그런 게 없는 국가는 체육행사 등 그렇게 나름대로 모이는 그때그때 국적별 국가 특성이... 시골 쪽에서는 센터나 공공기관 시설에서 해줄 수 있는 걸 못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접근할지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태국 노동자들은 거의 무비자로 들어온 사람...불법체류자들이예요. (현장 경찰관 A)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플래카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고 다른 기관 홍보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과되는 공과금 고지서에 캠페인 문구를 넣던가, 범죄 행위 시 처벌 문구 안내 등을 넣는 것도 방법일 거 같아요. (전문가 A)

농촌의 지역경찰에서 농촌마을을 순찰할 때 홍보물을 전달하면서 외국인의 피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미등록 체류 등 불안한 신분 때문에 농장 부근을 벗어나지 못하는 불법 체류자를 위해 반찬을 배달해 주는 밥차(반찬차)를 운영하는 외국인 마트 차량에 플래카드나 전단지 등을 부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미등록 체류자라는 신분상 약점으로 인해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현장경찰은 불안한 신분으로 인해 피해신고를 못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노동자는 없는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등의 치안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불법체류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할 것이다.

7. 농촌지역 현장 경찰의 지원 실태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직접 성폭력 피해를 당했거나 지인, 동료들로부터 들은 경험은 있으나 대부분 오래 전 일로 최근에는 큰 피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 인권문제의 사회적 이슈와 언론보도, 그리고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해 자국민들끼리 커뮤니티 또는 SNS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서로 소통하고 피해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때문인 것이다.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입국초기에는 한국 사회에서 경험이 없고 지인이 없어 성폭력 피해를 당할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합법 체류자의 성폭력 피해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이주노동자와 현장 전문가의 면담 결과이나 불법체류자 양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여성이주노동자의 성폭력 피해와 신고 대응의 어려움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경찰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찰 활동에 많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경찰의 순찰활동이 미비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인식개선이 더 요구되며, 통역요원을 다양한 국가로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통역비 지급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어 능력을 갖춘 외사경찰 증원과 외사경찰을 전문화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인사시스템 마련을 원하고 있다.

가. 지역경찰의 순찰활동 강화

농촌의 여성이주노동자들에 의하면 지역경찰의 순찰차는 신고가 잦은 지역 외에서는 볼 수가 없다고 한다. 대부분 농촌 마을마다 여성이주노동자들이 5~6명씩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이 멀리 있거나 교통이 불편하여 먼저 입국한 자국민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들은 외진 농장까지 지역경찰에서 순찰활동을 강화해 주길 바라고 있다. 순찰을 통해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 상담해주고 피해 실태를 미리 파악하여 정책부서에 제공한다면 외사경찰에서 치안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경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면 가해자인 한국인의 진술을

먼저 듣지 말고 피해자인 이주여성의 진술을 먼저 청취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역 경찰이 개선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 소통과 통역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고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시골에는 낮에 일하니까 거의 빈집이고 젊은 사람들 없고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고... 일을 시키는 사람도 일을 해야 되는 데... 순찰차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외국인이 많은 지역을 알 수는 있겠죠. (여성이주노동자 C)

저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가보기도 하고 통역도 해봤지만 이주여성의 말을 안 듣고 한국 남자들의 이야기를 위주로 들어요. 이주여성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한국에서 약자(이주여성을 말함)를 먼저 물어보고 파악해서 강자를 물어봐야 하는데 강자 말을 듣고 일이 끝날 때가 있어요. 약자의 말을 먼저 들어야 해요. (이주여성 A)

보통 한 마을에 외국인 노동자가 다섯, 여섯 명씩 있어요. 그리고 경찰은 순찰대 횡수가 늘(었)으면 좋겠고, 범죄에게 엄격하고 형벌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농촌에서 요즘은 순찰차를 볼 수가 없어요. 주로 상담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통보해서 이주민센터에서 하고 회사에서도 받아요. 상담은 가는 분은 할 수 있고 못가는 분도 있어요. 직접 전화해서 베트남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센터 가면 복잡해서 버스도 여러 번 타고... 그래서 못 갔어요. 그래서 베트남 선생님들한테 자꾸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래서 시골에서 정말 힘들어요. 지금은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이 버스... 솔직히 자주 없잖아요. 운전도 못하니까. (여성이주노동자 B)

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강화

이주노동자의 범죄피해 현장에서 가장 먼저 접촉을 하는 지역경찰과 수사경찰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건 관계자는 여성이주노동자의 한국어가 서툴다고 부당하게 대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치안활동이 되어야 한다. 경찰 내부적으로 이미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경찰과 수사경찰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의 강화는 더 필요하다. 외국인이라는 선입감으로 언어소통이 되지 않으면 합의 후 종결을 유도하고 있는 사례들로 볼 때 이주노동자의 피해 내용을 편견 없이 청취하고 가해자를 엄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에 힘써야 한다.

이제 이주노동자도 한국의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자국 경찰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한국 경찰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와 직접 대면할 기회가 많은 외사경찰 뿐만 아니라 지역경찰과 수사경찰까지 이주노

동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따뜻하게 다가갈 때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노동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들한테 무시하지 마시고... 한 국법을 잘 모르고, 한국어가 서툴다고 부당하게 대해 주시는 거 싫어요. 또 이주여성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을 선정 필요하고 한편 강화대책 바람직해요. 피해자가 무서워서 마음을 상처 받거나 정신은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 범인에게 경고해 줘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없고 피해자에게 인권보장 해주면 좋겠어요. (여성이주노동자 B)

제 입장에서 볼 때 저 혼자인 거 알고 외국 사람인 거 분명히 알고 그러니까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한국 사람한테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외국 사람한테는...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그렇게 느꼈어요. 경찰서에서 와서 해결은 하지 않고 좋게 좋게 하려고 해요. 좋게 끝내라고 해서 저는 사과를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 사과를 못 받았어요. (여성이주노동자 C)

고용센터 찾아가면 사장님에게 연락하고..... (농장)다시 가면 캄보디아 돌아가라고 해요. 욕도 해요. 애들이 깎일 따고 몸이 안 좋고 일을 조금 못하면 일을 못한다고 욕해요. 저는 통역이 아니고 마트를 운영하니까 사장에게 이야기해도 필요 없다고 해요. 전화해서 통역해 주면 전화를 그냥 끊어버려요. 필요 없대요. (이주여성 F)

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체류외국인들은 자국 경찰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국 경찰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주노동자들과 직접 대면할 기회가 많은 지역경찰부터 외사요원까지 항상 당신들을 도움 준비가 되어있다는 자세로 따뜻하게 다가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서로 신뢰가 중요한 거죠. (현장 경찰관 F)

반면, 농장주들은 관련 간담회에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면 변경을 해줄 수 있는데 자신들을 범죄인 취급한다며 자신들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오히려 이주노동자들끼리 조금만 부당하면 단합하여 태업을 하는 등 농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현장 전문가의 면접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타국에서 언어 소통이 되지 않고 각종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신분의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여성이주노동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 경찰은 약자인 이들을 위해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인권보호에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최근엔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을 해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쉽게 사업장 변경을 해주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주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주여성들도 자국민들끼리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방법을 알려줘 태업 같은 형태로 표를 내기도 하다 보니 농장주나 사업주의 인식이 변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농장주들은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안 쓸 수도 없고 본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외국인에 대한 선입감이 있는 것도 문제인데요. 인식 개선의 문제가 있어요. (전문가 A)

다. 농촌지역 통역요원 확대 및 통역비 개선

농촌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통역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제3국어인 희귀언어의 경우 농촌지역에는 통역이 없어서 사건 수사가 지연되는 등 매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앞의 면담 결과에서 알 수 있다.

경찰에서는 사건수사 시 통역지원을 위해 ‘민간인 통역 요원’을 매년 모집하고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주요 언어 통역은 그나마 어려움이 덜하다. 농촌지역은 제3국어, 즉 희귀언어의 수요가 더 많은데 거리가 멀고 통역 요원이 부족하여 이주노동자 지원업무에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농촌 외국인 밀집지역에 외국어 특채 경찰을 증원하여 경찰서 외근부서 치안 활동에 배치를 해야 한다. 당장 신규 채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면 외국어가 가능한 경찰을 외사경찰 인력풀로 구성하여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킨 후 다음 인사에 우선 반영하거나 정기적으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켜 ‘경찰관 통역요원’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한국어 자격증이 있는 이주여성을 ‘통역자원봉사단’으로 통합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주여성 통역자원봉사단은 모국어를 하는 이주여성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자국민이 통역을 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이주여성이 어려운 수사 용어를 오류 통역하게 되면 모두에게 큰 피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전문교육을 병행하여 강화하는 것이 경찰 신뢰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

이주여성 통역요원 확대와 함께 수사전 상담단계의 통역지원에 대한 교통비

지급 등 예산 및 제반 규정의 마련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 통역은 경찰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고용노동자의 취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민간대행기관에서 각 기관별로 다양하게 외국어 통역원⁶¹⁾을 활용하고 있다. 여러 기관의 통역원 운영을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통역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기관 특성에 맞게 정기적으로 사이버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해 본다.

이주노동자들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통역을 구하기 힘든데 센터에서는 각 나라마다 자원봉사자 통역을 활용하는데 한국어 강사 자격증이 있는 이주여성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역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신중히 활용해야겠어요. (전문가 C)

우리 지역은 오래 전부터 이주여성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율방범대, 치안봉사단, 하모니봉사단... 이주여성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인데 경찰과 캠페인을 한다던가, 통역을 도와주기도하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센터에 정식으로 등록된 통역들은 통역비를 주고 도와주고 있지만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은 통역비 없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통역 인력풀 구성을 확대해서 통역비 지급을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전문 교육을 시켜야 해요. (전문가 G)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언어문제예요. 외국인이 신고를 하거나 상담이 들어왔을 때 영어 등 공통어나 중국어 일어 등 중요 국가어는 그런대로 통역이 되는데 우즈베키스탄, 몽골어, 등 제3국 어 국가 이주노동자의 피해 신고나 상담이 들어오면 애를 먹고 있다. 파출소, 지역경찰에도 외국어 특채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은 지역에 모여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관할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외국인 나라 국가 언어를 할 줄 아는 외국어 특채 경찰관을 그 지역에 배치한다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현장 경찰관 D)

사건은 통역비가 지원되지만 그 전 단계, 상담이나 사건접수 전 단계에서 통역이 필요한 경우도 많은데 통역비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교통비 등 실비라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나 예산이 있다면 외국인이나 이주노동자들, 통역요원한테 덜 미안할 것 같아요. (현장 경찰관 B)

라. 외사경찰의 인력 증원 및 인사시스템 개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면접조사 대상자는 이주노동자가 급증하고 있

61) 경찰청 내에는 사법 통역을 지원하는 ‘민간인 통역요원’이 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에는 16개 국어 통역원, 여성가족부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는 13개 국어 통역원과 농협에서도 취업교육에 통역을 활용하고 있어 각 기관별로 지원 내용은 다르나 통역원을 활용하고 있다.

는데 치안력이 부족하다며 외사인력의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외사인력 수급문제는 중장기적 계획에 의해 증원되어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결혼이민자, 고용노동자, 계절노동자 등 체류 외국인 218만 명 시대에 불법체류자까지 외국인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서에 한, 두 명의 외사경찰이 내·외근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은 농촌 구석구석까지 경찰의 손길이 미치는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농촌지역 이주노동자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이주노동자간에 네트워크 구축으로 소통하지 않으면 업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이주노동자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한 외사업무 특성을 인식하고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하여 외사경찰을 전문화해야 한다. 그리고 희귀어 등 외사경찰 특채 등 신규 인력 증원이 어렵다면 외국인이 밀집되어 있는 지방청, 경찰서의 정보·보안·외사부서 과내 인력을 조정하고 외국어 능력 향상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의 증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을 돌봐주고 한국 생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주는 사람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 서로 신뢰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이슬람 사원에 나가 근로자들을 만나고 농번기에는 비닐하우스나 축사에서 같이 땀을 흘리기도 하면서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뢰관계를 쌓으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외사요원들이 자주 교체되는 것은 꼭 지양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바뀌다보니 외국인노동자들과 소통이나 교류가 안돼요. (현장 경찰관 E)

각 국가별로 리더인 사람이 있는데 외근을 많이 해야 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들을 잘 활용하면 피해자를 파악하고 도와주는 데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적은 경찰서는 외사경찰 1명이 이것저것 모든 일을 하다 보니 농촌까지는 한계가 있어요. 외사경찰을 늘려 외근을 많이 하면서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야 범죄 예방 홍보도 하고 범죄자도 검거하는 등 범죄예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외사경찰이 자주 교체되다 보면 정보교류가 없어지면서 업무가 더 어려워지죠. 외사경찰도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게 해야지 외국인들과 친분이 쌓여 큰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장 경찰관 B)

현장 멀리까지 나가긴 나가는데 문제는 전화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새벽 3시에 전화를 받기도 하고... 저희가 24시간 대기할 수도 없고... 체류 외국인이 4천 명 가량 되는데 외사경찰 2명한테 국가별로 상담을 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현장 경찰관 E)

이외에도 농촌지역 문제로는 성폭력 등 큰 문제보다 언어폭력, 갈등, 임금문제 등 사소한 문제가 많다.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는 이유 중에는 농장주와 이주노동자 간 문화차이 또는 언어소통 부족 등 사소한 오해를 해소하지 못하고 쌓여 불신이 생기고 해결이 안 될 때 더 나은 여건을 찾아 도주하여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농촌지역에 고용센터나 분소를 설치하여 통역이 가능한 상담사를 배치한 후 세심한 중재역할을 해준다면 불법체류 예방과 농장주와 이주노동자 간의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를 사전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외사경찰과 지역경찰은 배치된 상담사와 협력하여 이주노동자의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다.

최근 불법체류자 증가 원인으로 정부의 무사증⁶²⁾정책 확대와 관광정책에 따라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비자 발급기준이 완화된 것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무사증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제조업보다 일이 힘들고 열악한 환경으로 기피하고 있는 농업분야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정식 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에 들어왔지만,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의 ‘고용허가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기도 한다.⁶³⁾

한편, 외국인 증가와 더불어 각 인권단체에서는 고용노동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 간 관리 권한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외국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민청’ 등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얼마 전에도 살인사건 하나 있거든요 회사에...회사는 잘 모르는데...통역.. 경찰의 살인사건 때문에 제가 갔거든요. 남자가 자기나라끼리 술 먹다가... 베트남 사람 남자 4명, 여자 2명이 싸웠어요. 한 명이 베트남에 전화하고...옆에 와이프가 전화로 옆에 여자소리 듣고 “바람 피냐” 하니까 화가 나서 옆에 있는 여자에게 화를 내고... 여자가 나갔지만 칼을 들고 따라 나가고... 옆에 있던 동료들이 말렸지만... 화내고,

62) 무비자입국제도라고도 하며 2002년부터 관광객의 증가를 위해 시행된 제도,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도 입국을 허용한 제도로 한 달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한편, 무사증 제도를 통해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범죄와 불법체류자 또한 증가했다. 2016년 상반기 기준 제주도의 중국인 불법 체류자는 약 8000명에 달했다.(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2018. 10. 8. 검색).

63) 헤럴드경제(2018. 6. 29.), 외국인 정책 ‘총체적 난국’...무사증 줄이고 고용허가제 손봐야..., <http://news.heraldcorp.com>(2018. 9. 20. 검색).

말리고 하다가 옆에 있는 동료가 칼에 찔렸어요. 그렇게 나중에 경찰 나오니까 6명 중에서는 5명 불법 체류자예요. 문제 생기잖아요. (이주여성 A)

8.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와 밀양의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피해 및 인권침해에 대한 언론보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 이행사항을 권고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서는 많은 개선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정작 지원단체를 찾지 못하고 농촌의 일터에 있는 여성이주노동자들은 개선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실정이다. 농촌 현장의 경찰관은 여성이주노동자가 성폭력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경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에서는 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 부처 통합지원 시스템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가. 부처 통합형 ‘이주여성 폭력피해 원스톱지원센터’ 필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⁶⁴⁾는 전국 38개소가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와 가족에게 여성경찰관 등이 24시간 근무하면서 수사, 의료, 법률,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곳으로 전국 성폭력상담소 168개소, 가정폭력상담소 203개소, 성매매 피해상담소 29개소 등이 있다.

여성이주노동자들은 범죄피해 시 내국인에 비해 여러 기관의 복잡하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를 한 곳에서 통합지원 할 수 있는 ‘이주여성 폭력피해 원스톱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이다. 즉 여성이주노동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통역지원, 쉼터입소, 사업장 연계, 체류지원, 경제적 지원, 법률지원 등 복잡한 지원 체계에서 통합적인지원이 가능하도록 ‘이주여성 폭력피해 원스톱지원센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심층면접 결과에서 알

64) 2018년 5월 기준으로 총 38개 센터 통합형 14개, 위기지원형 16개, 아동형 8개이다.

수 있다.

지역경찰 및 수사경찰관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각 나라별 통역을 지원받아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수사가 종결된 후에는 ‘이주여성 폭력피해 원스톱지원센터’로 피해자를 인계만 하면 타 기관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즉, 경찰, 고용노동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이나 지원 단체의 각종 지원이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신고 시 원스톱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다누리콜센터에서는 통역이 가능하구요. 쉼터에는 성폭력, 가정폭력에 노출된 분들은 입소할 수 있으나 지역에 이주여성 쉼터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경찰에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며 사업장 변경은 필수적이구요. 고용센터의 근로감독관의 도움으로 사업장 변경이 우선되어야 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 받을 수 있으니 해바라기센터를 통해서 상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 D)

이주여성 성폭력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데 오히려 이주여성 근로자들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접수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피해 여성들은 한국어와 지리에 익숙하지 않고 신고할까 고민하며 갈등하다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심리 상담을 해주는데 외국인이나 이주여성들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해주는 상담사가 없어 외국인들도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상담을 해줄 상담사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외국인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이 원스톱지원센터를 이용할 경우 센터에 통역과 상담을 해줄 인력이 필요하고, 원스톱지원센터에 추가적으로 ‘사업장 변경’과 같은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서비스도 요구되므로 고용노동부 등 이주노동자센터와 협조 체계가 이뤄져야겠습니다. (현장 경찰관 E)

이주여성들의 범죄 피해 문제는 가족, 자녀, 경비, 체류 문제 등 아주 복잡한 문제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동학대를 지원하는 체계와 같이 이주여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러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장 경찰관 B)

나. 여성이주노동자 상담지원 서비스 개선

여성가족부에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를 2019년까지 5개소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전화로는 여성긴급전화(1366)와 다누리콜센터(1577-1366)가 있다. 여성긴급전화(1366)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로 상담

을 받을 수 있다. 전국 16개 시·도에 18개소를 설치⁶⁵⁾하여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및 안내·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전화상담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긴급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 대해 위기 개입 및 긴급구조를 위해 112, 119와 연계 조치하고 피해자 및 동반 자녀에 대한 임시보호(최대 7일) 및 숙식제공, 심리상담, 의료지원을 하고 보호시설, 상담소 등 관련 기관에 연계하고 있다.

다누리콜센터(1577-1366)는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상담과 긴급지원 등 인권보호와 한국생활 정보제공, 생활통역 및 3자 통화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⁶⁶⁾ 해당 국가의 이주여성 전문상담원과 13개 언어⁶⁷⁾로 상담이 가능하다. 서울 등 7개소에 설치되어 중앙센터는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나 그 외 지역은 주중 일과시간만 상담이 가능하여 평일 18:00 이후와 공휴일은 서울로 자동으로 연결되어 가까운 이주여성보호시설로 연계된다.

〈표 26〉 다누리콜센터 설치 현황

지역	대표상담전화	사무처
서울(중앙)	1577-1366	1577-1366
경기 수원		031-257-1841
대 전		042-488-2979
광 주		062-366-1366
부 산		051-508-1366
경북 구미		054-457-1366
전북 전주		063-237-1366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이주여성의 생활상담은 물론 국적, 체류문제 등의 상담과 법원 진술 시 통·번역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 후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경찰, 해바라기센터

65) 중앙센터 및 광역자치단체(시·도)단위로 전국 16개 시·도에 18개소 운영하고 있다.(단, 경기도의 경우 인구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개소 추가 설치)

66) 2014년 4월부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와 다누리콜센터(1577-5432) 통합 운영하여 기존의 1577-5432를 누르더라도 1577-1366으로 자동연계 된다.

67)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필리핀)어, 크메르(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13개국 언어이다.

등에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12〉 여성긴급전화(1366)와 다누리콜센터(1588-1366) 지원체계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주노동자의 국내생활 적응 및 원활한 취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산하에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지역 외국인력지원센터 9개소 및 전국에 거점센터 34개소를 설치하여 이주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는 외국인 노동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한국문화 교육 등 고용 체류지원 상담을 16개국 언어⁶⁸⁾로 365일 전국 어디서나 일과 중에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는 외국인의 생활 적응에 필요한 체류, 국적 등 출입국 업무를 온라인과 전화를 이용하여 다국어로 제공하는 안내 창구이다. 한글, 영어, 일본어 등 4개 국어 온라인 정보안내, 전자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일 09:00~22:00까지 한국어와 19개 외국어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68) 영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니, 스리랑카, 중국어,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고용 허가제 송출국 16개국 언어이다.

위에서 기술한 모든 상담전화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거나 정보가 부족하여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상담지원 서비스를 이주여성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대표번호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다누리콜센터,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외국인력상담센터 등과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제3자 통역지원서비스 제공 등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⁶⁹⁾ 경찰기관에서도 해당 지역의 다누리콜센터, 이주여성쉼터, 외국인고용센터 근로감독관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통역지원부터 수사종결 후 종합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성폭력 수사할 때 외국인들을 먼저 신경을 써주세요. 외국인 여성 노동자를 위해서 원스톱 센터 설치를 해주면 좋아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업무분장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통화할 때 편하게 각 나라마다 언어를 만들어 한국에서 오래 산 사람은 한국어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들어와서 문제 생기면 한국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전화할 때 각 나라마다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신고 할 수 있는 말 필요해요. 한국에서 오래 산 사람은 말을 조금이라도 하니 신고할 수 있는데 들어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그 문제 생겼으면 한국말을 못해서 신고를 못하니까요. (여성이주노동자 B)

우리 도에 이주여성들을 위한 광역 단위 '성폭력상담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주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상담이 체계적이고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전문가 G)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1366번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홍보가 안 되거든요. 결혼이민자들은 다 사용해요. 교육하면 다 이야기 해주거든요. 24시간 해결한다. 대부분 이용해요. 노동자들은 베트남에서 알려 주고 여기 와서 이용 안하면 잘 몰라요. 근로자들이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이주여성 A)

다. 여성이주노동자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시행⁷⁰⁾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3년 간 3회, 재고용은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사업장 변경 사유로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69) 여성신문(2018. 4. 17.), 성폭행 피해 여성이주노동자, 앞으론 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 가능, <http://www.womennews.co.kr>(2018. 9. 10. 검색).

70) 경향신문(2018. 9. 10), 성희롱 피해 여성이주노동자 ‘긴급 사업장 변경’ 추진, <http://news.khan.co.kr>(2018. 9. 27. 검색)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휴업, 폐업과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이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법무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출국 조치된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언어문제나 정보부족, 체류의 불안정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를 당했지만 신고가 어려운 이주여성을 위한 대책으로 ‘긴급 사업장변경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사용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주노동자가 당해 근로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횡수를 제한하지 않고 사업장을 긴급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다. ‘긴급 사업장변경제도’ 외에 일반 사업장 변경허가는 사업주가 승인해 주지 않을 경우 지역고용센터의 근로감독관을 통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

한편, 성폭력 피해 입증은 내국인도 힘든 일로 자칫하면 입증도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자신이 신고한 가해자와 계속 일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신고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경찰에서는 여성이주노동자의 범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성폭력 피해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 조치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여성들은 신고하고 싶어도 거기에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믿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죠. 말이 통하지도 않고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되고, 말이 안 통하는 게 정말 문제예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해요. 그냥 돈 벌어서 자기네 국가로 돌아가야 하니까, 신고를 안 하거나 못하고 사업장을 이동해 주는 것을 원하더라구요. 성희롱 같은 경우 두 사람 외에 증거가 없잖아요. 사업장만 변경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현장 경찰관 B)

라. 다기관 협력체제(Multiple-Agencies Partnership) 구축

현재 경찰에서는 자치단체, 지역의 주요기관, 언론, 시민단체가 지역치안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다기관 협력체인 ‘외사치안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외사치안협의회’를 이주노동자가 많은 농촌지역까지 확대하여 각 기관 지역협의체를 적극 구성하고 단순히 이주노동자들의 경제적 지원 외에도 여성이주노동자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의 주요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선진 각 국 개혁의 흐름은 과거의 한 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다 체계적이고 통합적 관점에서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는 다기관 협력체제(Multiple-Agencies Partnership)를 통해서 실행되는 것이다. 즉, 이주노동자 문제에 작용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종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관계 기관인 경찰, 행정안전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간 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기적인 협조 속에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 인프라 구축은 각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명료화함은 물론 서비스 전달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여성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공통의 탐색·분석·해결·평가까지 모두 협력적인 관계에서 구성될 수 있는 21세기 새로운 전략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경찰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각 기관 간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조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의 여성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 단체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업 시스템을 갖추고 이주여성으로 구성된 외국인 명예경찰대, 치안봉사단을 활성화하여 자국민 대표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자국민의 범죄피해 예방과 범죄신고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력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방 시청은 외국인 관련 업무를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어 정확한 파악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센터의 경우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주 대상이고 OO타리클럽에서 주최하여, 매년 외국인 근로자 축제를 하고 있구요. 불법체류 근로자들도 있다 보니 주최 측에서는 경찰의 교통정리 등 도움이 필요한데도 업무협조를 하지 않아요. 외사요원들만 행사에 나가서 혹시 문제가 발생에 대비하여 활동만 하고 있는 정도예요. 현재는 외국인 관련 문제가 발생한 후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을 하는 정도죠. 우리 서에는 외사자문협력위원회를 창립했어요. 외사자문협력위원회에서 외국인명예경찰대를 운영하고 있고, 불우한 다문화가정을 돕거나 다문화가정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 등을 주로 하고 있어요. **(현장 경찰관 F)**

현재 외국인차안봉사단이 운영되고 있고, 이 봉사자들이 캠페인이나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이 결혼이주봉사자들이 국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하면 신고를 해주기도 해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분들을 잘 활용하면... 범죄신고 요원화하여 자국민들의 범죄 피해를 경찰에 연락해주기도 해요. 이분들을 잘 활용하면 많이 도와줄 거예요. 그런데 성폭력 같은 경우는 자국민한테 신고를 하면 신분 노출 문제점 때문에 약간 꺼리기도하고, 중간 역할을 해준 외국인이 신분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현장 경찰관 B)**

외국인이 많은 지역은 ‘외사안전구역’이 7개서에 19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시, 면, 자율방범대, 외국인방범대, 유관기관 등이 ‘외사치안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어 서로 협력하기가 좋아요. 아직 없는 지역이 더 많으니까 이런 지역까지 확대한다면 다른 기관에 협조하기도 쉽고 이주여성을 도와주기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장 경찰관 B)**

마. 여성이주노동자 보호시설 증설 필요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피해자가 임시 거주할 수 있는 보호시설은 매우 부족하다. 지역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현황은 아래 <표 27> 과 같이 전국에 총 28개소 설치되어 있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주거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을 하고 있다.

<표 27> 지역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 설치 현황

(2018. 9. 30. 기준)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쉼터(개소)	28	4	1	2	1	1	1	1	4	1	1	1	2	3	3	1	1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71)

71)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sp/hrp/sp_hrp_f004.do(2018. 10. 2. 검색).

현장 경찰의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피해자 처리 어려움 중의 하나는 피해자의 쉼터 입소 문제이다. 2018년 9월말 현재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은 전국 총 28개소로 농촌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시설마저도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 후 피해자를 쉼터로 인계하려면 먼 거리까지 이동해야하는 어려움으로 농촌지역에 소규모 쉼터라도 더 설치해주길 원하고 있다.

현재 이주여성 쉼터는 결혼이민자 등과 같이 국적이나 영주권이 있는 사람은 입소가 쉽지만 이주노동자는 입소가 어렵다 보니 각 나라별 공동체에서 돈을 모아 집을 얻어 자국의 친구들을 도와주기도 한다.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 민간시설에 위탁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예산지원이 적다보니 유지가 어려워 해당 부처에서 예산지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이 이주노동자 사건 발생 시 가장 힘든 일은 피해자의 신병처리 문제라 생각해요. 피해 발생 후 거쳐, 출국비용, 치료비문제 등...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귀국문제, 숙식문제를 토로하고 있어 조사 후 경찰이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조사 후에 나갔다 다시 찾아가 호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폭력뿐만 아니라 금전적 피해 등 다양한 피해자를 위한 임시쉼터 등을 지역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사전에 협조하여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는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공장, 비닐하우스, 시장 등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있는 것은 농촌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민간단체 등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경찰관 E)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가정폭력 등 피해가 있을 때 한국 영주권이나 국적이 있고 어느 정도 쉼터 입소가 쉽지만 불법체류 노동자의 경우가 문제입니다. 임시 노동자의 경우는 주로 단기(1개월)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민간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월 30만원을 지원 받고 있죠. 임시노동자의 경우 피해를 입고 사업장을 나와도 문제가 많아요. 쉼터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예산 지원이 너무 적어요. 사업장 변경을 하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다른 직업을 구하기 위한 구직등록을 하는 등록기간 동안 거주할 때가 제대로 없어 친구 집 등에 임시로 얹혀 있던가 하는데 문제가 있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쉼터를 많이 만들든지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A)

제3절 소결

농촌 여성이주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실태 및 현장 경찰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2018년 6월 5일부터 2018년 10월 5일까지 4개월간 경기 평택, 충남 아산·논산, 경남 밀양, 충북 음성지역의 여성이주노동자, 현장 전문가, 현장 경찰관 등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한 결과이다.

농촌 여성이주노동자의 전반적인 성폭력 피해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지를 8개 항목으로 반구조화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심층면접 방법으로 청취하고 경찰의 지원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농촌의 여성이주노동자의 증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를 통한 도입 과정을 알아보았다. 농촌지역의 이주노동자는 국제결혼으로 이주해 온 결혼이민자와 사증면제·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비전문취업(E-9)인 고용허가제와 단기취업(C-4)인 계절근로제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고용노동자의 도입과 교육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민간대행기관인 농협중앙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분야의 사전 취업교육과 입국 후 취업교육은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계절근로제를 통한 이주노동자 도입은 법무부에서 농번기 인력난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취업 외국인 고용제도로 개별 지자체에서 자매결연한 외국 지자체의 주민이나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중에서 법무부의 승인 받아 도입되고 있으며 호응이 좋아 증가 추세에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2018년 10월 현재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6개국에서 도입되며 농업분야는 네팔, 태국,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5개국에서 도입되고 있다. 농업분야에 도입된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조사 지역인 경기 평택, 충남 아산·논산, 충북 음성, 경남 밀양지역에서 대부분 시설하우스 채소재

배, 딸기, 토마토, 오이, 깻잎, 고추 및 과수원의 과일농사 등 여성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농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노동을 하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는 고용노동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인력관리공단, 농협 등 다양한 기관으로 분산되어 도입, 교육, 지원,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총괄적인 기관으로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심층면접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농촌 여성이주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실태와 경찰 대응의 문제점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농촌 여성이주노동자의 성희롱·성추행 등 성폭력 피해와 인권침해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농촌에서도 이주노동자를 위해 환경을 개선하고 많은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스마트 폰을 휴대하고 있어 자국민끼리 페이스북,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입국초기 여성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보가 없는 데다 아직도 농촌의 연령대 높은 농장주들은 가부장적 사고로 성적접촉, 성적언어 등 성희롱·성추행을 스스럼없이 하고도 성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욕설, 반말 무시 등 인권침해는 여전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한국인 농장주 외에도 자국민 이주노동자 도입 브로커에 의한 성매매 유혹을 당하거나 입국 과정에서 과대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해 체류기간 종료 후 불법 취업자로 전락하여 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등 피해가 더 심각할 수 있으므로 경찰의 관심과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농촌의 여성이주노동자는 성폭력 피해에 언어소통 및 정보부족으로 경찰에 신고 등 대응을 못하고 있다.

선행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언어소통이 되지 않고 정보가 부족하여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도 같은 이유로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신고를 못하거나 대응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16개국에서 입국하고 있는 고용노동자와 계절노동자는 한국어 시험을 보고 입국하지만 입국 초기에는 한국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신고를 못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한국 법률에 대한 무지, 신고절차 등 정보가 부족하고 비자연장에 따른 신분 불안정 등 다양한 이유로 신고를 못하고 있다. 또한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자국민 통역에 의한 2차 피해를 두려워하고 있다.

특히, 체류기간 경과 등 합법적 비자가 없는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출국 당할 것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찰에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범죄예방교육은 실질적인 교육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농촌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찰의 범죄예방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 경찰에서는 외사치안활동의 일환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범죄예방교육은 도시지역 이주여성 등 다문화 가족 위주의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절실하게 필요한 농촌의 이주노동자들은 범죄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었다는 선행 연구와 같이 이번 면접조사에서도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여성이주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외국인 노동자 도입 경로별로 도입 기관과 협업을 통한 취업교육을 활용하는 방안과 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재교육을 하는 등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넷째, 농촌의 여성이주노동자는 다국어 전단지 등 치안정보 제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다국어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치안봉사단과 함께 범죄예

방 캠페인을 하거나 결혼이주여성을 통하여 치안정보를 제공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도시지역 체류 외국인 위주의 치안활동으로 정작 정보가 필요한 농촌 여성이주노동자에게까지는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입국초기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법률과 범죄 피해에 대한 대처 방법을 모르고 경찰서 위치조차 몰라 신고를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국 초기 여성이주노동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치안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사결과로 알 수 있다.

다섯째, 농촌지역 현장 치안활동 부족에 따른 인력증원 및 인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경찰서 외사경찰은 대개 한, 두 명이 내·외근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넓은 농촌지역의 현장 치안활동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노동자 면담 결과에서 순찰 등 농촌 현장의 치안활동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인력 증원으로 현장 활동을 강화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농촌의 여성이주노동자 지원업무는 복잡하고 다양하여 이주노동자, 관련 기관 등과 상호 네트워크 형성이 되지 않으면 효율적인 업무 지원이 어렵다. 이와 관련 외사경찰의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하고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이주노동자 및 각 기관 업무 담당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전문화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여섯째, 농촌지역 이주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국가의 통역관 확대 및 통역비 개선이 필요하다.

경찰청에서는 외국인 사건수사 통역을 위해 ‘민간인 통역관’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이주노동자들은 16개국에서 다양하게 도입되면서 농촌 현장의 제3국어(회귀어) 통역관 부족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역경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우 언어 소통이 되지 않아 가해자의 주장만 듣고 여성이주노동자의 피해 내용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중용한다는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사건수사 외에도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이해부족은 이주노동자와 농장주의 갈등유발 요인이 되기도 하므로 다양한 국가의 통역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통역관 확대와 더불어 경찰에 신고 된 사건이라도 상담 후 종결되는 사건은 수사 통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주여성 통역 봉사자는 주말과 야간에 넓은 농촌지역을 차량 없이 다닐 수 없는 농촌 여건상 교통비라도 지급해줘야 자원봉사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이주노동자의 성폭력 피해를 ONE-STOP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기능이 없다.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민간대행기관 등 이주노동자의 도입·교육·관리·점검 등 관련 업무가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다.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도 수사, 통역, 쉼터연계, 비자문제, 사업장 변경, 취업지원 등 다양한 문제를 한 곳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음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여성이주노동자를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이주여성 폭력피해 ONE-STOP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센터에는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상담전화를 이주여성이 기억하기 쉽고 활용이 쉽도록 대표적인 1개의 상담전화번호로 통합한다. 이 외에도 농촌지역에는 이주노동자 보호시설(쉼터)이 부족해 피해자를 멀리까지 데려가야 하는 불편으로 농촌지역에 보호시설 증설이나 민간시설에 예산 증액 등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된 여성이주노동자 도입, 지원, 관리·감독체계를 한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 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현장의 대상자를 심층면접 조사하여 농촌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피해 실태와 현장 지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을 제시해보았다. 이를 토대로 농촌 여성이주노동자의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의의

1990년대 초부터 정부 주도하에 농업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력 도입은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농업 현장의 여성이주노동자는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과 노동환경 속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폭언, 무시, 차별 등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이라는 특징적 요인으로 인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점 등 범죄피해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 한국과 다른 문화적 배경과 법률지식 무지로 인해 범죄피해 대처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언어소통이 되지 않고 정보 또한 부족하여 신고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세계적인 ‘미투(#Me Too)운동’과 함께 한국에서도 활발한 움직임 속에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언론에 알리게 되었다. 농촌 여성이주노동자들의 “나도 당했다”는 미투 폭로에 각 기관에서는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으며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여성이주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찰에서도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 여성이주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실태에 대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여성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현장 경찰의 문제점과 타 기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까지 다양하게 조사하였다. 경찰은 물론 관련 부처에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들이 제시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농촌 지역 치안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성폭력 피해나 인권침해 없이 한국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치안정책 수립에 등한시 되었던 농촌지역의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치안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선두적인 연구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주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 마련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조사대상 범위의 확장성을 위해 전 지역에서 다양한 국가의 여성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했어야하나 한정된 지역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여성이주노동자로 한정하였고, 자료수집 방법에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지 못하였음은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그리고 연구의 목적을 성폭력 피해 예방활동에 주력하다 보니 성폭력 피해 이후의 대응과 사후 관리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활발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제2절 경찰의 대응 방안

농촌지역에 결혼이민자, 고용노동자, 계절노동자 등 이주노동자가 다양한 이유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경찰의 외국인 치안정책은 주로 도시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추진해 왔다.

농촌지역 특성상 외국인 노동자는 대부분 넓고 외진지역에 거주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어 있으나 농촌지역은 외사인력 부족으로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치안활동이 미비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여성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등 범죄 피해에 대한 농촌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지역 이주노동자 범죄예방교육은 입국초기 취업교육 등 실질적인 교육으로 개선한다.

농촌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선행 실태조사에서 이주노동자의 76.2%가 범죄 예방교육을 받지 못했고, 52.6%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 몰라서 신고를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에 대한 범죄예방교육의 필요성과 도입 단계별로 한국어가 아닌 이주노동자의 모국어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한국에 입국하여 넓은 농촌지역에 흩어져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현재 농촌의 부족한 경찰 인력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나마 외사경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이주노동자 고용업체 등과 협조하여 범죄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와의 언어 소통이 어렵다보니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는 교육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효과적인 범죄예방교육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민간 교육 대행기관인 농협, 법무부, 지자체 등과 다기관 협력 인프라를 구축한 뒤 협업을 통해 교육을 진행한다. 외국인 고용노동자 교육은 농협과 협의하여 취업교육을 활용하고 계절노동자는 관할 경찰서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도입 후 농장 배치 전에 경찰관이 직접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정례화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다국어 전단지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교육 종료 후 모두에게 배부한다면 모든 이주노동자는 교육과 정보전달의 수혜자가 되어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

또한 면담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주노동자의 범죄예방교육 외에도 사용자(농업인)의 인식개선 교육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농협의 취업교육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농장주 외국인관리 교육’을 활용하여 농장주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입국초기 취업교육을 받은 이주노동자가 농촌에 배치된 후에도 지역 기관 및 민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재교육을 한다면 농촌 여성이주노동자의 성폭력 피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여성이주노동자가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도록 신고 방법을 개선한다.

면접조사 결과에서 여성이주노동자가 신고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언어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한국어를 못하더라도 외국어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112전화로 범죄 신고를 할 때는 경찰에서 3자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다국어 ‘112 문자신고’ 시스템이나 ‘경찰청 SMART 국민제보’ 앱의 메뉴를 다국어로 업그레이드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어가 가능한 이주여성으로 구성된 ‘이주여성치안봉사단’을 농촌지역까지 확대·정비하여 입국 초기인 여성이주노동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페이스북, 자국민 커뮤니티 등 SNS를 통해 피해 신고를 받아 경찰에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NGO단체, 외국인식품점 등을 외국인 도움센터(Assistance Center for Foreigners)’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식료품점은 이주노동자들이 장을 보거나 정보를 교류하는 장소로 의사요원과 Hot-Line을 구축하고 범죄 피해를 상담 받아 경찰에 신고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외국인도움센터를 찾아내어 확대·지정한다. 농촌지역에서 이주여성치안봉사단과 외국인도움센터는 입국 초기 이주노동자에게 경찰을 대신하여 치안정보를 제공하고 범죄피해 상담을 받아 경찰에 신고해 주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때도 있다.

셋째, 경찰관 인식개선 교육 강화 및 2차 피해예방으로 인권경찰 이미지를 제고한다.

농촌 여성이주노동자들이 경찰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것은 언어소통 및 정보 부족 외에도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낮은 신뢰도 때문이라는 것을 면접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자신과 관련한 사건으로 경찰과 접촉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경찰의 외국인에 대한 불친절한 태도와 안일한 사건 해결, 사건 수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 침해적 요인의 발생이 그 이유를 더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치안서비스 제공에 있어 경찰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경찰 내부 의식개혁 교육을 통한 가치관의 변화와 경찰조직 전체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찰 수사과정과 자국민 통역과정에서 피해자 신분노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넷째, 농촌지역 이주노동자에게 효과적인 맞춤형 치안정보를 제공한다.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자신과 관련한 정보를 몰라 피해를 당하거나 다양한 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성희롱·성추행을 당하면서도 피해인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거나 각종 범죄피해 지원과 관련된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입국 초기 여성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치안행정 서비스 뿐만 아니라 각종 다양한 치안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여성이주노동자에게 치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6개 국어로 전단지 제작하여 취업교육과 계절노동자 배치 전의 교육시간을 활용하여 배포한다.

농촌 현장에서 시간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16개 국어로 제작된 전단지 파일을 각 지역의 ‘이주여성치안봉사단’을 활용하여 페이스북, 자국민 커뮤니티 등 SNS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주여성이 운영하는 식료품점 ‘외국인 도움센터’를 활용하여 마트에 오는 이주여성들에게 전달하는 등 이주여성을 실질적인 치안활동에 적극 참여케 하여 지역 주민으로써 통합과 국민들의 편견과 선입관 해결에 큰 역할을 하는 등 거버넌스 시대의 경찰 파트너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의 지원 프로그램, 외국인축제, 자조모임, 새마을회부녀회, 마을방송 등 다양한 정보제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농촌 외사 인력증원 및 인사시스템 개선으로 외사경찰을 전문화한다.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경찰서 외사경찰은 대개 한, 두 명이 내·외근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넓은 농촌지역의

현장 치안활동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주노동자 면담 결과에서도 농촌지역은 순찰 등 치안활동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현장 치안활동이 강화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지원업무의 특성상 이주노동자, 치안봉사단 그리고 지역 관련기관, NGO단체 담당자 등과 협력체제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하고 다양한 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외사경찰의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하고 ‘보안경찰 선발시스템’과 같이 중장기 계획에 의한 ‘외사경찰 선발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경찰 조직인력의 전문화 측면에서 외국어 특채 증원 외에도 외국어를 갖춘 외사요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관 부서 내 조정을 통한 외사경찰의 충원과 더불어 지속적인 외국어 교육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기적인 교육으로 언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외사경찰을 전문화 한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국내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경찰활동의 전략으로서 치안서비스의 접근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여섯째, 농촌지역의 통역요원을 증원하고 통역비를 현실에 맞게 지급한다.

현재 16개 국가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도입되면서 농촌의 이주노동자 통역지원의 어려움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경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우 언어가 통하지 않아 피해자인 이주노동자의 이야기를 먼저 청취하지 않고 가해자의 말만 듣고 합의하게 하거나 사건을 종결한다며 경찰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기도 한다.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이해부족은 이주노동자와 농장주의 갈등유발 요인으로 문제가 확대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농촌의 성폭력 등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통역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제3국어, 즉 회귀어의 외국어 특별채용을 확대하거나 결혼이주여성 통역요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수사통역비 지급에 따른 수사통역 전 단계 상담통역 시 교통비 지급 등 관련 규정과 예산 마련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한 ‘이주여성 폭력피해 원스톱지원 센터’를 설치한다.

여성이주노동자 지원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대항기관, 각종 NGO단체 등 다수의 기관·단체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지원 체계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주노동자 문제에 작용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종합적이어야 한다.

이주노동자 지원 전문가의 면담 결과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 지원기관에서는 여성이주노동자를 배제하는 경향도 있으므로 ‘이주여성 폭력피해 원스톱지원센터’ 등 통합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장 경찰의 사건 접수·처리에서부터 통역, 보호시설, 심리치료, 법률지원, 비자문제, 사업장 변경, 취업지원까지 모든 절차가 한 곳에서 이뤄지고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상담서비스를 대표번호 1개로 통합 운영한다면 이주여성 누구나 쉽게 상담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관의 지원체계에 접근이 용이할 것이다. 이외에도 관련기관에서는 농촌지역에 이주노동자 쉼터의 증설이 필요하고 긴급사업장 변경제도의 신속한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앞에서 기술한 ‘컨트롤 타워’ 역할 기관 즉 ‘이민청’ 등을 조속히 설치해야한다. 그래서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면 많은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성폭력 피해나 인권침해 없이 한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주는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경찰청, 2018 경찰백서, 2018.

2. 논문

국가인권위원회,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3.

김상찬·김유정,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2011.

김정섭 외,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및 수급 안정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김주아,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연구”, 2013.

박민선, “농업부분 외국인 고용실태와 개선 방안”, 2012.

박선희 외, “경기도 이주여성 노동자 직장내 성희롱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5.

설동훈 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쟁점과 전망”, 2005.

소라미 외,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 조사” 인권법재단공감, 2016.

엄진영 외, “농업부분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2017.

윤경희, “다문화가정의 사회문제요인 탐색을 통한 경찰의 대응방안 연구”, 2010.

- 이병렬 외,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3.
- 이수연,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노동인권 실태” 「젠더법학」 제5권, 한국젠더법학회.
- 이주민방송 MNTV 외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및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 2013.
- 이지은, “경찰통역 실태와 경찰관의 인식 조사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15.
- 이현욱·송정아, “이주노동자의 계절적 수요와 인력공급에 관한 연구: 충북 괴산 배추산업을 중심으로”, 2016.
- 장명선 외, “제조업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6.
- 정도희,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제언”, 2012.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충청남도, 2016.
-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외,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연구보고서”, 2013.

3. 기타

- 한계레신문(2018. 8. 1.), <http://www.hani.co.kr>
- 경향신문(2018. 9. 10.), <http://news.khan.co.kr>
- 여성신문(2018. 4. 17.), <http://www.womennews.co.kr>
- 연합뉴스, (2016. 12. 14.), <http://www.yonhapnews.co.kr>
- 오마이뉴스(2018. 3. 12.), <http://www.ohmynews.com>
- 한국농어민신문(2018. 3. 13.), <http://www.agrinet.co.kr>
- 한국일보(2018. 2. 20.), <http://www.hankookilbo.com>
- 헤럴드경제(2018. 6. 29.), <http://news.heraldcorp.com>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고용노동부(<http://laborstat.moel.go.kr>)

네이버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외국인용관리시스템(<https://www.eps.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www.immigration.go.kr>)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II. 외국 문헌

Manfred Nowak, U.N.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
Commentary(2nd ed.)(N.P. Engel, 2005).

책임과제연구보고서 2018-06

농촌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피해 관련 경찰의 대응 방안

발 행 : 2019년 5월

인 쇄 : 2019년 5월



발 행 인 : 치안정책연구소장

발 행 처 : 치안정책연구소

충남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